

【무공자료 06-038】

「상업기업」 설립과 中國 내수시장 진출

2006. 12. 27

KOTRA 대련무역관

머리말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제까지 중국을 제조거점으로 활용해 오던 우리 기업들도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2001 년 WTO 가입에 따른 서비스·무역분야의 개방약속 이행을 위해 지난 2004 년 4 월에 유통시장 개방에 대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외상투자상업영역 관리방법」을 공포하였다. 이로서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국기업 전액출자에 의한 도소매 상업기업 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외자기업들의 중국 유통시장 진출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유통개방의 핵심인 「상업기업」제도는 아직까지 시행 초기단계인 관계로 우리 기업들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자료는 상업기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출처를 통하여 입수한 단편정보들을 종합정리한 것으로, 아무쪼록 외자상업기업 설립에 관심을 가진 기업들에게 기초적인 가이드북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조사자료의 작성에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한국계 상업기업인 상해 푸커리商貿유한공사의 강영철총경리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06.12. 27

KOTRA 대련(大連)무역관장
이평복

목 차

제 1 장 중국 유통시장의 개방동향

1. 도소매 판매법인의 대외 개방 / 03
2. 외자 상업기업의 경영범위 / 05
3. 상업기업 인가 절차의 간소화 / 08

제 2 장 상업기업을 통한 내수판매 방법

1. 외자 상업기업의 신규 설립 / 10
2. 생산형기업의 경영범위 확대 / 17
3. 보세구무역기업의 경영범위 확대 / 20

제 3 장 상업기업 관련 세무사항

1. 주요 세제 개요 / 24
2. 일반 납세인자격 / 26

제 4 장 상업기업 관련 수속

1. 상업기업 신설 / 30
2. 생산형기업의 경영범위확대 수속 / 37
3. 보세구무역기업의 경영범위확대 수속 / 38

제 5 장 관련 자료

1. 「상업기업」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사례) / 40
2. 관련 주요 법령
 - ①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 46
 - ② 외상투자非商業企業의 유통판매 경영범위 추가문제에 관한 통지 / 52

③ 보세구 및 보세물류원구의 무역관리 문제에 관한 규정 / 54

④ 외상투자상업기업 심사비준의 지방부문에 대한 권한위양에 관한 통지 / 55

제 1 장 중국 유통시장의 개방동향

1. 도소매 판매법인의 대외 개방

- 오랫동안 닫혀 있던 중국의 유통시장은 2004년 4월 상무부 8호령 「외상투자상업 영역관리방법」(이하 「8 호령」)이 공포되면서 동년 12월 11일부로 외자기업에게 전면 개방되었다. 그 전까지 높은 진입장벽으로 존재했던 외자의 지분비율 제한, 등록자본 및 투자자의 규모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대부분 폐지되었다.
- 유통시장 개방의 핵심은 100% 전액출자 外資상업기업(中文:外商投資商業企業)의 설립허용이라고 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등에 종사하는 상업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특히, 상업기업에는 「수출입권」과 「국내유통권」이 동시에 부여되어, 국내외로부터의 폭넓고 자유로운 상품의 조달과 판매, 수출입이 가능해 졌다.
(주) 「국내유통권」: 자기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중국내에서 조달·판매하는 권한

【 외자기업에 대한 상업분야 개방 현황 】

형태	과거	유통개방 이후(2004.12 월)
소매	세계적인 대규모 유통업체에 한해 합자 형태로 소매유통이 시험적으로 인정됨	외자獨資기업의 소매업, 프랜차이즈사업 수행가능
도매 ①	외자 대형 합자무역기업에만 무역권, 국내도매권 인정	외자獨資기업에도 무역권, 국내도매권 인정
도매 ② (보세구무역기업)	保稅區外 연락사무소를 통해 수입상품의 국내도매활동 수행 (보세구내 교역센터를 통해 증치세영수증발행)	「상업기업 경영범위 확대→ 區外분공사 설치」를 통한 영업활동의 합법화가 요구됨. 區外연락사무소를 통한 영업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됨

- 상무부 8 호령은 기존의 외자기업(생산형기업, 보세구무역기업)에게도 경영범위 확대를 통해 도소매업을 겸영(兼營)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2006년 3월부터는 특정업체·품목을 제외하고 중앙 상무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상업기업의 비준권한이 위양(委讓)됨으로서 종래보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시간도

대폭 단축되었다.

- 상업분야의 대외개방에 따라, 외자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05 년도에 신규 설립된 상업기업은 1 천여개사를 넘고 있으며, 기존의 생산형기업이나 보세구무역법인의 도소매업 겸영(兼營) 사례도 증가추세에 있다. 날로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에 상업기업을 이용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수시장을 공략하느냐는 중국 진출 외자기업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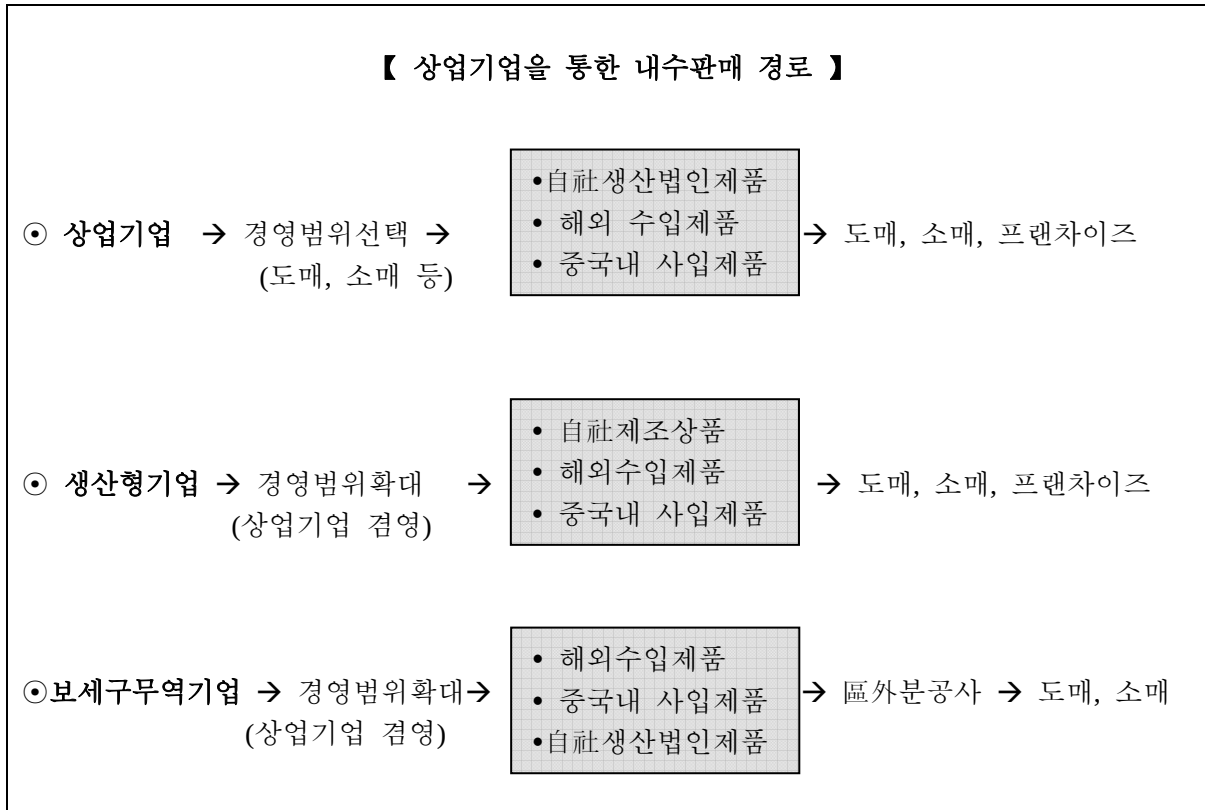
【 8 호령 상업기업 설립 동향 】

- 상업기업 신규설립: 1,027 개사 (2005 년말 기준)
- 보세구무역법인의 경영범위확대: 약 260 개사 (2006 년 7 월 기준)
- 생산형기업의 경영범위확대: 약 70 개사(2005 년 6 월 기준)

【 상업부문 진출 방법 】

진출 방법	상업활동 방식
(1)상업기업 신규 설립	• 인가받은 경영범위내 품목의 도매, 소매, 커미션대리, 수출입, 프랜차이즈 등 자유로운 상업행위 가능
(2)생산형기업의 경영범위 확대	• 기존 생산품목범위내에서 「자사제품+타사제품」의 도매, 수출입 가능. 제조업과 유통판매업(分銷)[주]을 겸영(兼營)하는 방식임
(3)보세구무역법인의 경영범위확대	• 인가받은 상업분야 취급품목의 범위내에서 보세구外 고객을 상대로 내수판매 수행. 기존의 보세물품 무역업과 국내 유통판매업을 겸영하는 방식
(4)CEPA 협정 활용 (홍콩과의 무역간밀화협정)	• 3 년 이상된 홍콩현지법인이 100% 출자할 경우, 상업기업 설립 가능. 서비스분야 등 아직까지 완전히 개방되지 않는 사업의 추진시 유리함 · CEPA 관련 서비스산업 개방(18 종): 경영권설립, 회의·진람, 광고, 회계, 건설·부동산, 의료·치과치료, 도소매, 물류, 貨物運送대리, 창고, 운수, 여행, 음악·영상, 법률, 은행, 증권, 보험, 통신
(5)투자성公社(지주회사)	• 경영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유통판매권 취득

[주] 유통판매(分銷): 타 공급상으로 부터 물품을 사입하여 도매, 소매, 대리판매 등 방법으로 거래처, 또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



2. 외자 상업기업의 경영범위

1) 상업기업

2004 년 12 월부터 설립이 허용된 외자상업기업은 외자투자기업의 한 형태이며, 외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생산형기업(제조 및 자사제품의 판매·수출)과는 달리 도소매 등 판매부문에서 활동하는 상업법인을 의미한다. 즉, 외자상업기업은 제조와는 상관없는 순수 상업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외자기업을 지칭한다. 상업기업은 상품의 수입과 중국내 판매, 중국내 상품의 사입판매 및 수출은 물론, 판매대행업, 프랜차이즈사업 등 다양한 상업활동의 수행이 가능하다.

○ 업종별 경영범위: 복수 업종의 겸업(兼業) 가능

- ① 소매업: 소매, 自營상품(自家점포 취급상품)의 수입, 중국내 상품의 구입수출, 기타 관련 복합 업무
- ② 도매업: 도매, 커미션판매대리(경매제외), 상품의 수출입, 기타 관련 복합업무

③ 프랜차이즈업: 타인에게 프랜차이즈경영방식의 점포개설 권리 양도

[관련법규] 외상투자사업영역관리방법 제9조

【 상업기업의 경영활동 정의 】

(1) 커미션 대리 (판매대행서비스)	상품의 판매대리상, 대리인 또는 경매인, 또는 기타 도매상이 계약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수령하고 타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도매	소매상, 공업, 상업, 기관 등의 수요자 또는 기타 도매상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관련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소매	고정된 장소 또는 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가 소비사용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관련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프랜차이즈경영 (특허경영)	보수와 프랜차이즈경영비를 취득하기 위해 계약체결을 통해 타인에게 상표, 상호, 경영모델 등을 사용토록 하는 행위

[관련법규] 외상투자사업영역관리방법 제3조

(주) (3)항 소매업종 중 인터넷판매, 카탈록 판매 등 고정점포를 통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무점포소매업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한 외자 관련법령이 공포되지 않아, 일부 시험적으로만 인가가 나오고 있음 (현재로서는 신청한다해도 인가취득 여부가 불투명).

2) 기존 외자기업의 상업기업 겸영(兼營)

(1) 외자 생산형기업

상업부문으로 경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조업과 국내유통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단, 유통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면 상업기업으로 인정되어 세제우대혜택을 상실한다.

- 경영범위: ①도매 ②소매 ③커미션판매대리 ④프랜차이즈

[관련법규]외상투자非상업기업의 도소매 경영범위 추가문제에 관한 통지((商資函[2005]제9호)

(2) 외자 보세구무역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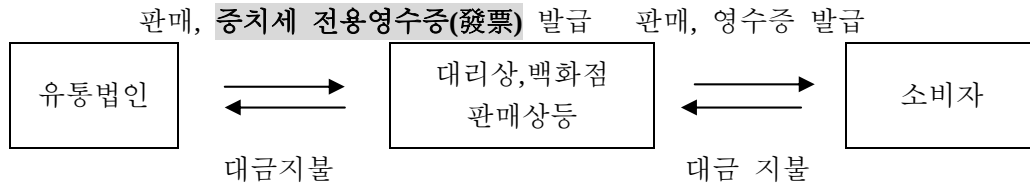
상업부문으로 경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세물품 무역거래와 유통판매(分銷)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 경영범위: ①도매 ②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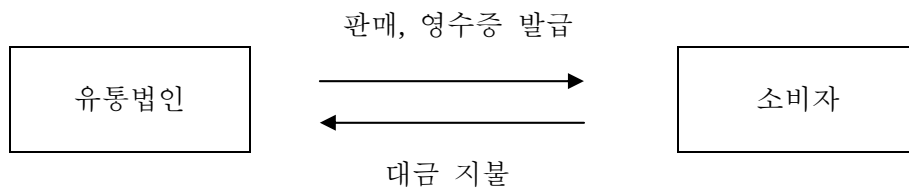
[관련법규] 보세구 및 보세물류원구의 무역관리 문제에 관한 규정 (商資字[2005] 제76호)

【도매·소매의 개념】

【 도매 】



【 소매 】



【대외무역권 개방과 국내유통권】

- 무역권은 ①자영수출입권 ②수출입경영권(대외무역권, 中文:外貿유통경영권)으로 분류된다. 외자기업의 경우, 생산형기업에 한해 자영수출입권(自社用원자재수입 및 自社제품수출)이 원래부터 허용되고 있으나, 수출입경영권(타사 제품을 수출입하는 권한)은 지난 2004년 7월 1일부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외자기업에 전면개방되었다. 즉, 外資·內資기업을 불문하고 「대외무역경영자」 등록만 행하면, 누구나 수출입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관련법규] 대외무역경영자등록·등기방법 상무부령[2004]제 14호

- 그러나, 무역권은 유통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권이 부여되는 대상은 유통권을 보유한 기업에 한정된다. 따라서, 생산형기업의 경우, 대외무역경영자등록을 신청해도 원칙적으로 등록이 수리되기는 하나, 그 회사의 경영범위에 유통권(도매·소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품을 수입한다해도 국내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경영범위에 유통권이 없는 기업도 대외무역경영자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등기서류에 「수입상품의 국내판매업무는 불포함」이라는 규제조항이 날인되기 때문에, 설사 상품을 수입을 한다 해도 내수판매할 수 없다.
- 외자기업이 상업기업을 신설하거나 기존법인의 경영범위를 확대할 경우, 국내유통권이 허가되므로 대외무역경영자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수출입과 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다.

(주) 「수출입경영권」: 자기 명의로 해외의 회사와 물품 및 기술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하며 자주적인 통관권이 부여된다.

3. 상업기업 인가 절차의 간소화

- 상업기업 비준권한은 상무부 8 호령 공포 이후, 계속 중앙의 상무부가 행사했으나, 비준신청이 쇠도하면서 절차간소화 차원에서 2006 년 3 월 1 일부터 대부분 항목이 지방으로 위양(委讓)되었다. 계속 상무부의 비준심사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1) 통신판매 등 무점포 소매업종 (2) 전국적인 규모의 대형 소매업 (3) 중요 공업원재료 등 국가관리품목 정도에 불과하다.
- 과거에 省級 지방정부의 1차 심사를 거쳐 상무부 심사비준에 이르기까지 3-4 개월 소요되던 인가절차 소요기간이 1 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방부문이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상업기업의 설립절차는 기존의 외자투자기업 설립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간소해 지고 있다.

【상업기업에 대한 지방부문의 인허가권 확대】

- 특정업태과 품목을 제외하고 외자상업기업의 설립, 생산형기업 및 보세구무역기업의 상업경영범위 확대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은 省級지방정부 및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이양되었다.

중앙의 상무부가 계속 인가권한을 행사하는 분야	
• 경영방식	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에 의한 판매
• 도소매 품목	강제,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등의 중요 공업원재료 및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제 17 조, 18 조 규정상품
• M&A 방식의 외자상업기업설립	국내외기업이 동일 경영층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또는 실제 관리자가 동일인인 경우, 상무부 인가 필요

[소매점포에 대한 인허가 절차 완화]

- 지방부문이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외자상업기업 소매점포의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되어 전국적인 규모의 대형 소매점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에서 허가취득이 가능해졌다.

외상투자상업관리방법(2004 년 6 월 시행)

점포면적	점포수	중국내同類점포수
3 천㎡이하	3 개이하	30 개이하
3 백㎡이하	30 개이하	300 개이하

→

상업기업 심사의 지방위양(2006 년 3 월 1 일)

점포면적	점포수	중국내同類점포수
5 천㎡이하	3 개이하	30 개이하
3 천㎡이하	5 개이하	50 개이하
3 백㎡이하	-	-

【유통시장의 개방 경과】

• 외자 전액출자 상업기업의 개방

- 2004 년 6 월 1 일시행: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商貿部[2004]제 8 호령)
- 상업기업 형태로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경영 허용
- 상업기업 설립과 동시에 수출입권과 국내유통권 취득
- 12 월 1 일 부터 외자 외자獨資 상업기업 설립신청 접수 개시

• 외자생산형기업의 상업분야 진출 개방

- 2005 년 4 월 2 일 공포: 외상투자非상업기업의 도소매 경영범위 추가문제에 관한 통지(商資函[2005]제 9 호)
- 생산형기업도 경영범위를 확대할 경우, 도매, 소매, 판매대행, 프랜차이즈 가능
- (종전) 自社생산품외에는 타사제품 및 수입제품의 내수판매 불가능 → (개정) 경영범위확대를 통해 매출의 50% 범위내에서 국내판매를 허용
- 2005 년 5 월 하순부터 생산형투자기업의 경영범위 확대신청 접수 개시

• 보세구무역기업의 상업분야 진출 개방

- 2005 년 7 월 13 일 공포: 보세구 및 보세물류원구의 무역관리 문제에 관한 규정 (商資字[2005] 제 76 호)
- 보세구무역기업도 경영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출입권, 유통판매권 취득 가능
- (종전) 보세구外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편법적으로 수입제품의 내수판매 → (개정) 경영범위 확대를 통해 연락사무소를 分公社(판매지점)로 전환하여 도소매업의 합법적 수행을 허용
- 8 월 중순부터 보세구무역기업의 경영범위 확대 신청 접수개시

• 지방부문에 대한 상업기업 심사비준 권한의 위양(委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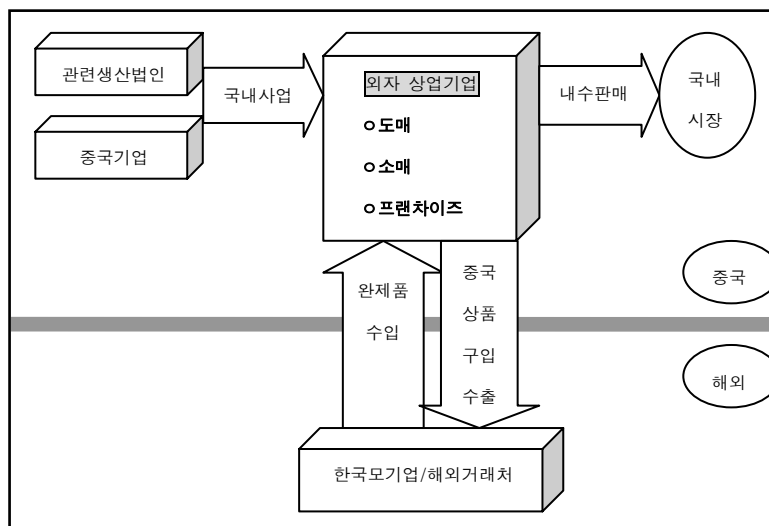
- 2006 년 3 월 1 일 시행: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심사비준을 지방부문에 권한 위양하는 것에 관한 통지(商資函[2005]제 94 호)
- 특정업체, 특정품목 및 대규모 소매점을 제외하고 상업기업의 설립인가권한이 지방정부 상무주관부문,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로 위양

제 2 장 상업기업을 통한 내수판매 방법

1. 외자 상업기업의 신규 설립

- 상업기업은 「판매회사」라는 의미이며, 인가받은 상품의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단, 생산활동은 할 수 없으며, 생산형기업에 주어지는 세제우대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 상업기업은 무역권과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기 명의로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으며, 내수판매시 증치세전용영수증(發票)을 발행할 수 있다. 해외 모기업 및 자회사 생산제품, 중국내 생산제품을 종합하여 판매상품의 라인업을 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지역에 分公社(판매지점)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이 가능하다.
- 중국에 기존 생산형기업이 있는 경우, 이와는 별도로 판매창구 역할을 하는 상업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와 판매기능을 분리할 수 있어 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내수판매 모델 】



1) 외자 상업기업 설립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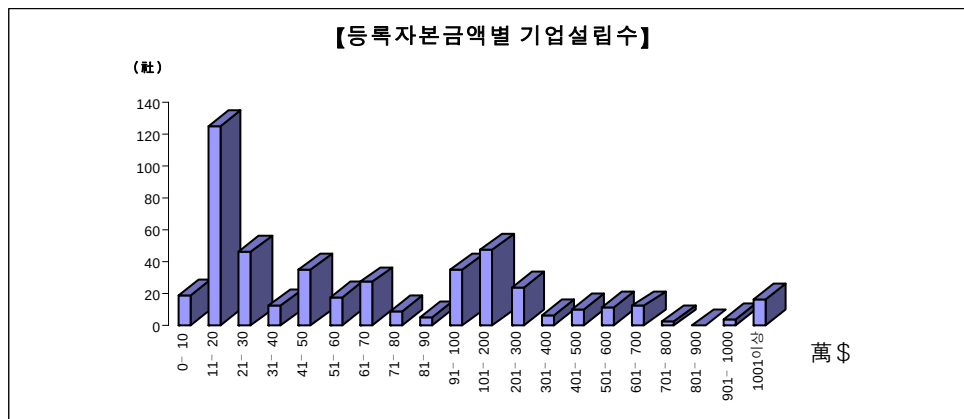
- 2005 년도에 중국 상무부가 설립인가한 외자상업기업은 1,027 개사이며, 계약기준으로는 외자도입액이 18 억 1,600 만원에 달했다. 출자형태별로 보면, 독자형태로 설립인가된 외자상업기업은 625 개사로 전체의 61%를 점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여, 2005 년 4/4 분기의 경우, 설립인가된 외자계도매기업은 매월 100 개사를 초과했다
- 2005 년에 설립인가된 외자상업기업중 소매기업은 187 개사로 2004 년의 6 배에 달했다. 상업기업이 개설한 점포는 1,660 개에 달했는데, 점포형태별로는 전문점이 57%, 대형슈퍼가 25%, 백화점이 14%, 편의점이 4%를 차지했다.
- 상업기업 인가초기인 2005 년 상반기에는 주로 특정 품목에 전문화되어 있는 전문 무역업체들을 중심으로 인가되었으나, 2005 년 9 월에는 취급품목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수출입 및 국내판매를 할수 있는 종합상사형 상업기업도 인가되기 시작했다(일본 종합상사 3 개사 비준취득).

【 외자 상업기업의 주요 설립 패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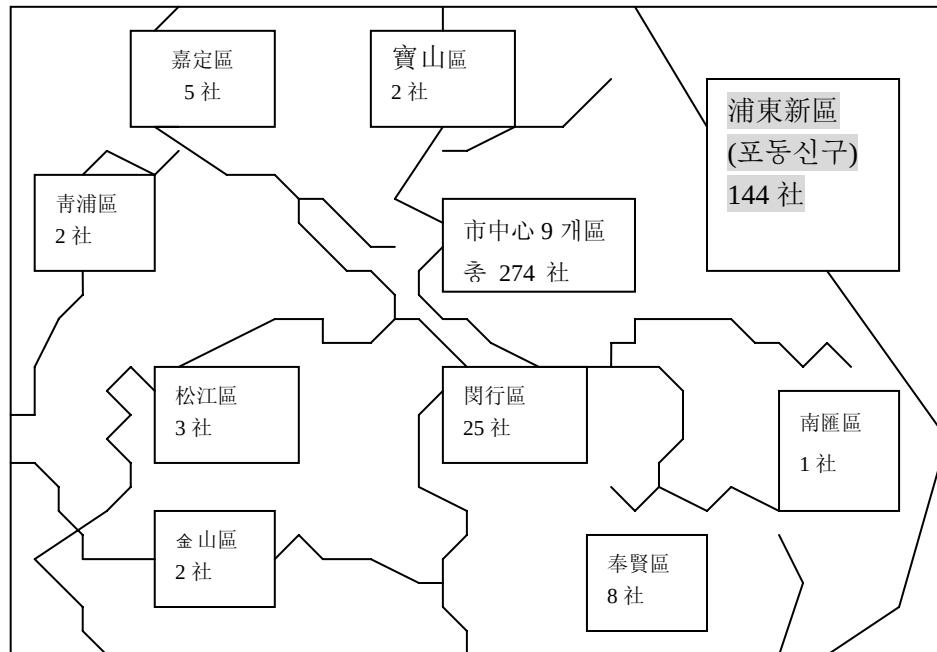
유 형	상업기업의 종사부문
• 전문 무역업체	도매 (산업제품, 원료·부품 및 각종 소비재)
• 산업재 제조업체	내수판매 총괄기능(自社중국공장 생산품 및 모기업의 수입제품)
• 소비재 제조업체	소매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패션의류 등)

【 상업기업 설립현황 - 상해시 사례(2005 년말 기준) 】

- **설립기업수:** 상해는 중국의 상업유통 중심지로 외자상업기업의 설립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2005 년말 기준 총 466 개사의 외자상업기업이 설립되었다.
- **등록자본금 규모:** 11 만불- 20 만불의 소규모 등록자본금으로 설립된 상업기업은 총 125 개사로 전체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은 점유비를 보이고 있다.



- **상업기업의 지역별 분포:** 분포도를 보면, 포동신구에는 총 144 개사가 설립되어 전체의 약 31%를 점하고 있으며, 區단위로 가장 많은 상업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동신구에 상업기업을 설립하면, 기업소득세 15% 적용 등 포동신구의 독자적 세제우대정책이 부여되고 있어, 상해 다른 지역(기업소득세를 33%)에 위치하는 것 보다 세제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2) 상업기업 설립관련 유의사항

○ 사업규모에 상응하는 최저 자본금의 설정

개정회사법(2006년 1월 시행)에 의하면, 최저자본금은 유한공사일 경우 3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규모, 판매상품 등을 감안하여 심사당국이 자본금 설정규모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즉, 고가상품을 취급하거나 경영범위가 넓을수록 더 많은 등록자본금 설정이 요구된다.

생산형기업과는 투자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상업기업에도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투자총액에 점하는 최저자본금 비율의 규제가 적용된다. 상업기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초기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된 투자총액(자본금+차입금)의 70% 이상의 자본금을 기한내 불입(3백만불 이하 투자의 경우)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자금 부담이 상당히 크다.

최저자본금의 경우, 지역별 투자유치정책에 따라 다르나, 舊회사법 규정(23조)을 참고금액(상품도매 50만 원, 상품소매 30만 원)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때문에 사업규모가 작더라도 이 수준 이하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취급품목수의 제한

상무부는 2005년에는 세관분류 22 종류중(HSCode 대분류) 3 종류에서 최대 5 종류 이내로 제한하도록 행정지도를 행했다. 그러나, 2005년 9월에 종합적인 상품취급이 허용된 상업기업(일본 종합상사)이 설립인가를 취득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품목수 제한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세제혜택 수혜 지역의 선정

생산형기업과는 달리 상업기업에는 기업소득세 감면 등 세제우대조치가 없으므로 일반지역에 설립할 경우, 33%의 높은 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상업기업에게도 독자적으로 우대세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해 포동신구(기업소득세율 15%), 또는 심천 등 경제특구(15%)내 설립이 권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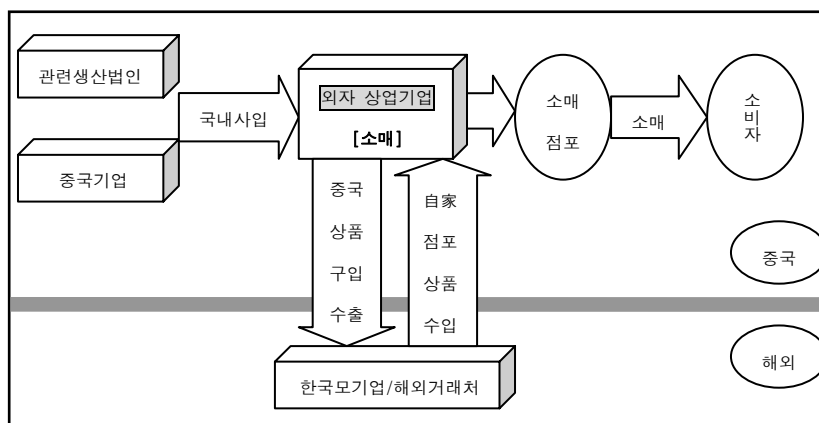
○ 경영범위의 적절한 선정

판매사업의 전개방향과 향후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경영범위를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도매업만을 경영범위로 선정할 경우, 미래에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센터 등 설립 필요성이 생길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서비스센터를 통해 메인터넌스부품 및 악세서리류를 판매하는 것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신청단계부터 소매업도 경영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판매방식별 내수판매 모델

(1) 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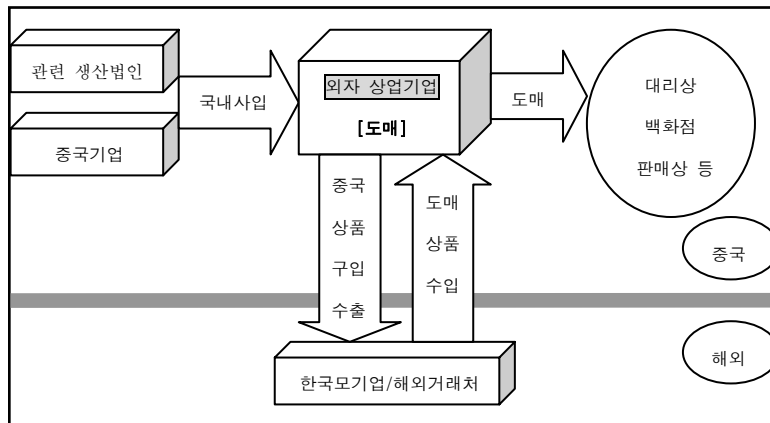
【 8호령 소매 상업기업 】



- 국내외에서 조달/수입(自家점포 취급상품만 가능)하여 자체 소매점을 통해 판매한다.
- 중국내 제조상품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한다.

(2) 도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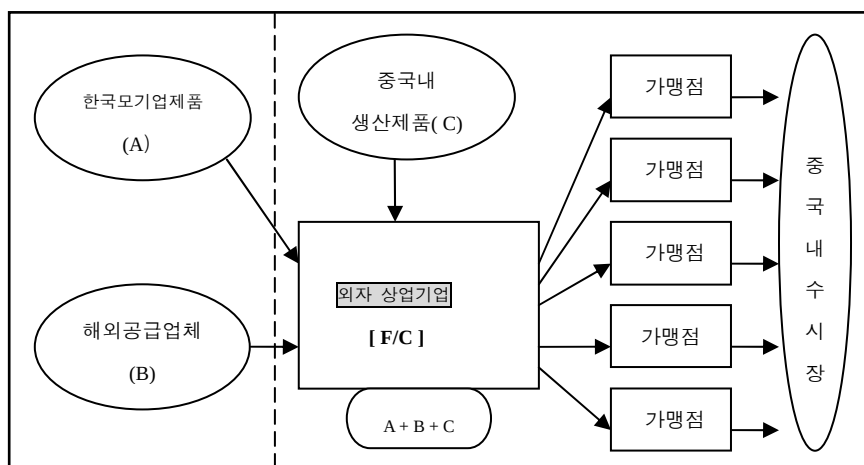
【 8 호령 도매 상업기업 】



- 국내외에서 상품을 조달/수입하여, 도매로 판매한다.
- 중국내 제조상품을 구입하여 수출한다.

(3) 프랜차이즈(F/C) 사업

【 프랜차이즈 경영 방식 】



- 국내외에서 상품을 조달/수입하여 가맹점을 통해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 사항]

- ① 근거규정: 프랜차이즈 경영관리방법(상무부령 2004 년 제 25 호, 2005 년 2 월 1 일)

- ② 프랜차이즈 경영조건: 중국내에서 1년이상 경영하는 직영점포 2개 이상 보유
- ③ 기존 외자기업의 프랜차이즈 경영범위 추가
기존의 투자기업이 프랜차이즈를 겸영(兼營)할 경우, 당초의 심사인가부문에 「프랜차이즈방식에 의한 상업활동 종사」라는 경영범위의 추가수속을 행해야 한다(상업프랜차이즈 경영관리방법 제 33 조).

【 상업기업 설립前 검토 사항 】

- 상무부 8 호령 공포 당시 외자상업기업의 설립허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으나, 예상과는 달리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설립허가가 나오고 있으며, 2005 년 말 기준 이미 천여개가 넘는 업체가 상업기업 허가를 취득했다. 상업기업은 적정한 범위의 자본금 및 취급품목 설정, 사업타당성보고서 제출 등 규정된 절차와 수속을 밟으면, 일반 외자 투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설립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상업기업의 설립이 아니라, 설립후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모델의 경영이 가능한 지 여부이다. 상업기업의 수익성은 일반적으로 다음 3 가지 요소에 좌우되므로 설립 전에 충분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요구된다.

① 판로 문제

중국시장에는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산제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구매담당자의 관행적인 리베이트 요구가 강하며, 유통점 입점장벽도 높고 입점료를 비롯, 부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내수판매 에 어려움이 많다. 아울러, 땅이 넓고 지역별로 상관행과 문화가 달라 판로개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② 상품의 경쟁력 문제

중국시장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닐 경우, 상품의 선택기준은 가격이 거의 좌우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시점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코스트에 구애받지 않고 가격공세로 나오는 예가 많다. 제품의 브랜드이미지와 품질경쟁력이 취약하여 이러한 가격공세에 휘말릴 경우, 경영부실로 이어진다.

③ 판매 대금회수 문제

중국기업을 상대로 판매할 경우,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이 많아, 판매대금 회수 지연은 물론, 회수 불능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문에 자금운영에 압박을 받아, 경영부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판매대금 회수 리스크는 중국 내수판매에 있어 외자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상업기업의 설립의 장단점 】

[장점]

- 국내외로부터 자유로운 상품소싱이 가능하므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다양한 가격, 품질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판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보세구무역기업과 비교시 장점
 - 정식으로 유통권을 부여받은 회사임으로 판매대금미회수 사태 발생시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다
 - 수출입권과 국내유통권을 보유함으로 자체적으로 통관 및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내수판매에 따른 수수료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상업기업은 중국 어느 지역이든 분공사 설치가 가능하므로 전국적인 판매망의 구축이 가능하다

[단점]

- 투자총액에 대한 자본금비율의 최소제한 규정에 따라(3 백만불 이하의 경우 투자총액의 70%), 투자 소요자금의 상당부분을 사전에 불입해야 하므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다
- 외자상업기업에는 세제우대조치가 없으므로 일반지역에 상업기업을 설립할 경우, 33%의 고율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으로 세금부담이 과중하다
- 관련 생산법인이나 해외 모기업제품을 구매하여 중국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할 경우, 관련기업간 거래에 해당되어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 증치세전용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일반납세자」자격 조건이 상업기업에 대해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소규모 상업기업의 경우 「일반납세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약 33 만元の 증치세 납세비용의 부담이 불가피하다(28page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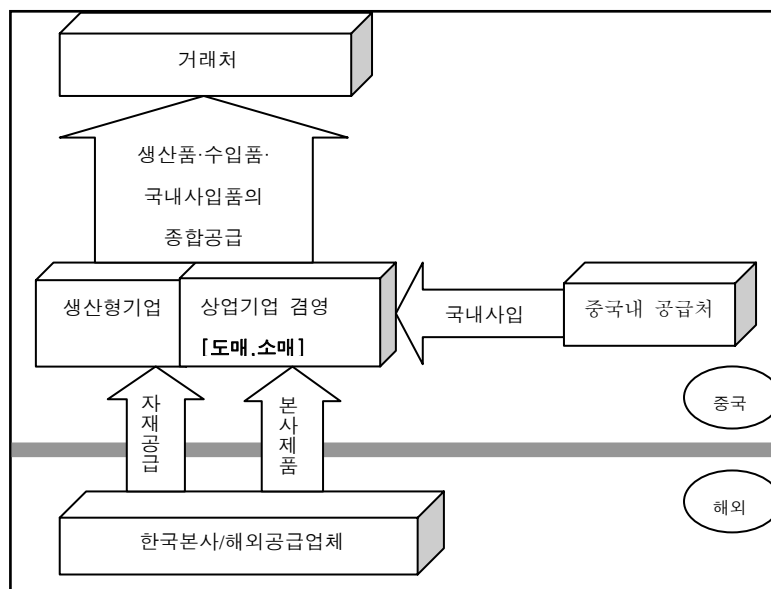
【 상업기업의 경영범위 인가 사례】

명 칭	○○ 商貿(상해)유한공사
기업유형	外商獨資
소재지	상해시
등록자본	00 만 달러
설립일	2005 년 0 월 0 일
업종	도매업
경영범위	A, B, 및 기타 C 관련품 등의 커미션대리, 수출입 및 상기 제품의 메인터넌스, 애프터서비스 및 기타 관련서비스 (행정허가에 관계되는 경영의 경우에는 허가증에 근거한 경영)

2. 생산형기업의 경영범위 확대

- 최근까지 생산형기업은 自社생산제품만 내수판매가 허용된 관계로 판매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런데, 2005 년 4 월부터 외자 생산형기업의 경영범위확대를 통한 도소매업 겸영을 허가하는 상무부 통지가 공포됨에 따라, 유사한 품목일 경우, 국내외 타사제품의 취급도 가능해 졌다. 즉, 해외의 모기업 및 타기업 제품, 중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도 自家생산제품에 추가시켜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단, 생산형기업의 상업경영범위 추가에 있어서는 기존 생산품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규정이 있다. 또한, 도소매업의 겸영을 위해서는 신규 상업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수요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본금의 증자가 요구된다.
- 상업경영범위 추가시, 타사 제품의 매출액이 기업 총매상고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생산형기업으로서의 세제우대(2 免 3 減 세율경감, 설비수입면세)가 취소되고 기존에 주어졌던 세제혜택분이 환수조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내수판매 모델 】



1) 생산형기업의 경영범위 확대 인가 동향

2005 년 3 월 하순부터 경영범위 확대 인가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상무부 外商投資司의 발표(2005 년 6 월 12 일)에 의하면 8 호령에 의한 경영범위 확대신청은 100 개사 이상(투자성공사 포함)에 이르고 있고 이중 70 개사가 이미 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경영범위 확대 관련 유의사항

○ 상업활동 품목의 제한

생산형기업은 본질적으로 생산형기업이므로, 아무 품목이나 상업 경영범위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인가된 생산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국한하여 상업행위가 인가된다.

예를들어 생산형기업의 경영범위가 「디지털카메라와 그 부품의 생산, 自社생산품의 판매」인 경우, 도매업으로 경영범위가 확대된다면 「自社생산품의 판매」라는 문구가「디지털카메라와 그 부품의 생산, 도매, 수출입, 커미션 대리」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품목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의 상업행위는 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 상업 매출액의 점유비율 제한

제조기업은 대부분 설립시 장려업종 인정을 받아 수입설비의 면세취급 및 기업소득세의 감면 등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상업 경영범위 추가후, 타사제품의 유통판매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면, 생산형 외상투자기업은 법적으로 비생산형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뀐다. 따라서, 생산형기업으로서 취득한 여러가지 세제우대조치가 취소되고 과거에 주어졌던 감면분이 환수된다.

(주) 상무부가 2005 년 4 월에 발표한 외상투자비상업기업의 경영범위확대 관련 통지에는 「생산형기업의 자격유지에는 상업판매액의 비율 30% 이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으나, 2005 년 9 월 2 일 상무부 발표 「외상투자상업(유통판매)기업 매뉴얼」에는 이 비율이 다시 50%로 수정되었다(1994 년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외상투자기업이 생산형업무와 비생산형업무를 겸영할 때의 세제우대조치에 관한 통지」에서는 그 기준이 50%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과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정정된 것으로 보임).

○ 자본금 증자 요구

경영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신규사업 추진으로 간주되어 필요한 운전자금을 증자하도록 심사당국으로부터 요구받게 되므로 자금부담이 뒤따른다.

【 생산형기업의 경영범위 확대의 장단점 】

【 장점 】

- 상업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생산품목 범위내에서 자사제품 이외에도 타사제품 (한국 모기업, 해외자회사, 중국내 제조상품 등)을 패키지화하여 국내판매, 수출입 및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다
- 생산형기업에는 자사 제품의 영업관리와 기술지원에 숙달된 인력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사 제품과와 동일·유사제품의 내수판매에 필요한 애프터서비스, 메인テナンス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수 있다
- 자사 생산제품 총매출액이 50%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 한, 기존에 부여된 세제우대조치를 계속 향유할 수 있다
- 상업기능 추가시, 새로운 판매회사의 설립이 필요없고 기존의 경영관리 및 영업부문 인력자원 등을 풀로 활용할 수 있다

【 단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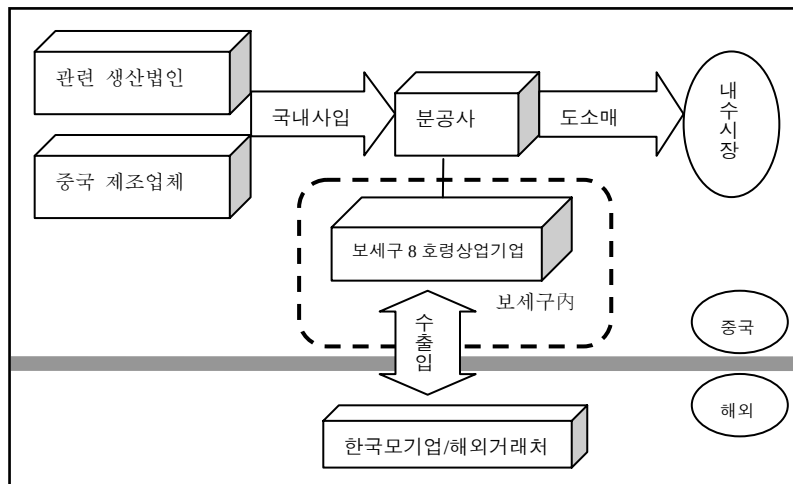
- 유통판매업이 가능한 품목은 생산형기업의 기존 생산품목 및 유사품목으로 제한된다.
- 경영범위 확대시 심사당국으로 부터 신규 상업행위와 관련한 자본금 증자를 요구받게 되므로 추가적인 자금이 소요된다
- 유통판매 수입이 총 기업매출액의 50%를 초과하면, 생산형기업에 주어지는 세제우대조치가 취소되고 과거의 세금감면분까지 소급징수될 우려가 있다
- 제조업과 상업업을 겸영하는 기업은 생산부문과 상업부문의 2 중 장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별도의 회계와 결산이 필요하므로 회계업무부담이 커진다.
- 상업행위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생산형기업의 우대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 (33%)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임)

3. 보세구무역기업의 경영범위의 확대

- 최근까지 보세구무역기업은 수출입권과 국내유통권이 없어, 내수판매시 거래액이 커질수록 수출입공사와 보세상품교역시장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제약조건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7월에 보세구무역기업도 국내 유통판매권의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자체 통관 및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경영범위 확대를 통해, 그동안 보세구외에 연락사무소를 통한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던 내수판매 활동을 합법화할 수 있게 된다. 영업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판매대금 미회수 등 거래상 분쟁 발생시 법적 대응이 가능해 되었다. 또한, 상업행위의 경영범위 추가시, 보세구외에 영업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분공사(판매지점) 설치가 허용됨으로서 보세품 거래와 함께, 일반지역에서의 내수판매업도 동시에 운영이 가능해 진다.

(주) 보세구무역기업은 區外소재 기업과의 무역을 수출입권을 보유한 중국의 수출입공사와 수수료베이스 무역대리계약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내수판매시 보세구교역시장을 통해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어, 거래액에 비례하여 상당액의 수수료가 소요된다.

【 내수판매 모델 】



1) 보세구무역기업의 경영범위 확대 동향

보세구기업으로는 2005 년 7 월에 다우케미컬이 최초로 인가되었다. 2006 년 7 월 기준, 경영범위확대 인가를 취득한 보세구무역기업은 약 260 개사에 달하고, 신청중에 있는 기업은 약 300 개사로 알려졌다. 최근, 합법적인 내수판매를 위해 보세구 기업들의 경영범위 확대신청이 증가 추세에 있다.

2) 경영범위 확대 관련 유의사항

○ 등록자본금

공상국은 사업계획의 규모와 투입자금을 근거로 증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증자하지 않으면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흑자기업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인가조건으로 증자를 요구받는 사례가 많다. 잉여자금과 차입능력이 신규 상업활동의 사업규모에 충분치 않는 경우는 증자요구를 받게 된다.

○ 국내 유통판매 품목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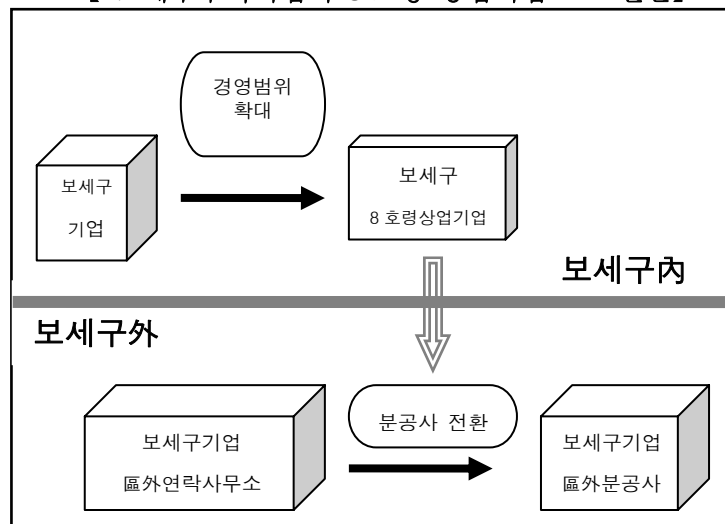
보세구무역기업이 경영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상업기업과 마찬가지로 취급품목을 3-5 종류로 제한받는다.

* **다우케미컬의 경영범위 확대사례:** 「화학품,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및 농약제품 등 관련제품의 도매, 수출입, 커미션대리(경매제외) 및 기타 관련업무」

3) 보세구무역기업의 경영범위 확대 필요성

8 호령에 근거, 보세구무역기업의 경영범위 확대가 허용됨으로서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區外연락사무소를 통한 그레이존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판매를 하고 있는 보세구무역기업의 경우, 국내 유통판매권을 취득하여 區外사무소를 분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해지고 있다.

【 보세구무역기업의 8 호령 상업기업으로 전환】



【 區外 사무소의 영업행위 판단 기준 】

- 장부가 보세구에 있는가, 區外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가
- 채무담당자가 보세구에 있는가, 區外 사무소에 근무하는가
- 區外사무소의 면적, 인원 등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Q & A 】

- 수출입통관을 자기명의로 할 수 있는가 → 「대외무역경영자의 등록등기수속」에 의거 수출입경영권을 취득하면 자사 명의의 수출입통관이 가능하다. 과거와 같이 수출입공사를 통할 필요가 없게 되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 내수판매로 취득한 인민元을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외화로 환전할 것인가 → 자체통관시 자사명의로 「수입報關單(수입통관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계약서, 인보이스 등 서류를 은행에 함께 제출함으로써 人民幣 영업수입을 외화로 환전할 수 있다
- 증치세전용영수증(發票)을 자체 발행할 수 있는가 → 경영범위 확대에 의해 「유통판매권(分銷權)」이 부여되면 보세구外로 직접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세구 교역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증치세영수증의 발행이 가능하다. 단, 區外 분공사에서 일반 납세인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보세구내의 교역시장을 통해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보세구무역기업의 경영범위 확대의 장단점 】

[장점]

- 상품을 수입하면 통관시에 관세 및 수입증치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보세구를 활용하면, 해외로부터 보세구에 들어오는 단계에서는 관세, 수입증치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즉, 실제 판매시점까지 지불이 유예되므로 그만큼 자금부담이 경감된다
- 보세구는 세제우대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업소득세율이 일반지역보다 훨씬 낮다(보세구 15% / 일반지역 33%).
- 보세구무역기업이 경영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존의 보세무역 거래뿐만 아니라, 區外에 분공사를 설치하여 통관후 人民幣으로 내수판매도 할 수 있어 비즈니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단점]

- 상해 外高橋보세구무역기업이 국내 유통판매권을 취득할 경우, 최근 상해시 조례에 의해 상해시내에 분공사 설치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상해보세구기업이 상해 이외의 타 지역에서 분공사 설치하는 보세구 기업의 법적 성격상 인가취득 여부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 종래의 보세구무역기업은 품목제한없이 교역시장을 통해 내수판매가 가능하나, 경영범위를 확대할 경우, 3-5 종의 품목으로 국내 유통판매 품목을 제한받게 된다
- 보세구무역기업은 해외수출을 위해 중국기업으로부터 보세화물을 구입하여 보세구에 반입할 때, 세무당국은 보세구 반입후 다시 非보세화물화하여 일반지역으로 환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치세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환급이 장기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증치세환급우리 불투명성 때문에 수출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상업기업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다.

제 3 장 상업기업 관련 세무사항

1. 주요 세제 개요

1) 증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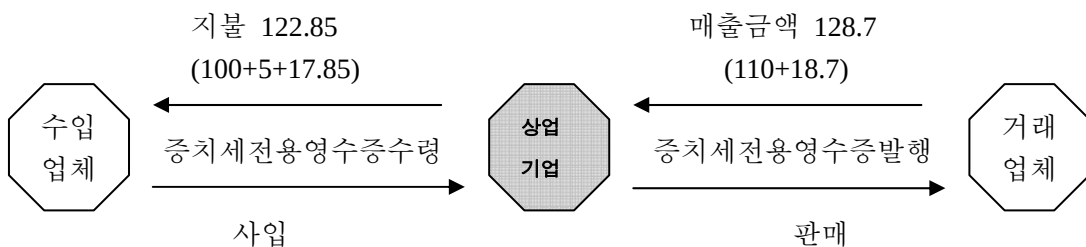
증치세(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7%(일부 농산품은 13%)이며, 과세대상자가 물품 판매시점의 매출증치세로부터 물품사입 시점의 매입증치세의 차액을 납세한다.

【 증치세 과세 사례 】

(사례) 물품사입(또는 수입)가격 100, 관세율 5%, 이윤 10 으로 가정할 경우

(1) 수입물품을 수입업자로부터 사입하여 중국내 판매하는 경우

- ① 수입증치세액: $100 \times 1.05(\text{관세율}) \times 17\%(\text{증치세율}) = 17.85$
- ② 매출세액: $110(\text{가격 } 100 + \text{이윤 } 10) \times 17\% = 18.7$
- ③ 증치세납세액: $② - ① = 0.85$



(2) 중국내 사입물품을 중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 ① 매입세액: $100 \times 17\% = 17$
- ② 매출세액: $110 \times 17\% = 18.7$
- ③ 증치세납세액: $② - ① = 1.7$

(3) 중국내 사입물품을 중국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환급율을 13%로 가정)

- ① 매입세액: $100 \times 17\% = 17$
- ② 환급불능액: $110 \times (17\% - 13\%) = 4.4$
- ③ 증치세 수출환급액: ② - ① = 12.6

* 매입세액증 12.6 은 수출자에 환급되나, 수출 FOB 가격에 대한 징세율과 환급율과의 차액분은 수출자의 비용부담이 된다

(주) 상기 (1)-(3)의 사례는 일반납세인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증치세전용영수증(면제·공제·환급이 가능한 세무소발행 증치세發票)을 발행할 수 있는 일반납세인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소규모납세인 상업기업의 경우, 매출 증치세액은 4%이나, 매입세액(또는 수입증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도 수출환급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그대로 안게 되며, 판매시도 4%의 증치세액을 상대방에게 넘기지 못하고 자신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측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2) 영업세

노무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판매로 취득한 영업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매출세이다. 상업기업의 커미션수입의 과세율은 5%이며, 증치세와는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소비세

특정상품(골프볼, 골프채, 고급손목시계, 자동차 등)의 수입, 생산, 위탁가공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이다.

[화장품 수입시의 과세 사례]

- 소비세납세액: $100 \times 1.16(\text{관세율}) / (1 - \text{소비세율 } 8\%) \times 8\%(\text{소비세율}) = 10.09$
- 수입증치세액: $100 \times 1.16(\text{관세율}) / (1 - \text{소비세율 } 8\%) \times 17\%(\text{증치세율}) = 21.43$

4) 기업소득세

제반 경비를 공제한 후 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세율은 국세부분이 30%, 지방세 부분이 3%로 합계 33%인데, 지방정부는 지방세(3%)를 감면결정할 수 있다(대련시의 경우, 기업소득세율 30%).

○ 경영기간 10년 이상의 외자생산형기업

- ① 「2免3減」 적용. 즉, 이익계상후, 1-2년차 기업소득세 면세, 3-5년차는 반감
- ② 기본세율 33%중, 국세부분(세율 30%)은 기업설립지에 따라 24%(연해경제개방구 등) 또는 15%(5대 경제특구, 상해 포동신구, 보세구 등)로 감세

○ 상업기업을 포함한 비생산형기업

일체의 세제우대가 없으며, 세율은 33%가 적용된다.

5)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은 외국인이 4,800 元/月, 중국인이 1,600 元/月.
급여소득세율은 누진과세로 5-45%이다.

2. 일반 납세인자격

1) 일반 납세인 제도의 개요

○ 일반납세인 자격이란

일반납세인 자격은 증치세인보이스(증치세발표)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도매기업은 이 자격을 보유하지 않으면 판매처에 매입증치세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증치세「보통發票」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매출세액으로부터 매입세액의 공제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모두 비용부담이 되며, 상품 수출시 증치세환급도 받을수 없다. 이 때문에 일반납세인은 도매기업으로서 반드시 취득해야할 자격이다.

○ 일반납세인자격 취득 시기

일반납세인자격인정에는 세무등기증, 출자감사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영업허가증 취득후, 외화·人民元 구좌의 개설, 세무등기, 자본금의 불입, 불입자본금에 대한 회계사사무소의 출자감사보고서 발행을 거친 후 비로서 일반납세인자격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기관

일반납세인자격인정 신청시, 상업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국에 신청한다.

○ 신청 수속

- ① 일반납세인 자격인정신청
- ② 소관세무국의 實地 검사, 상업기업 법정대표자(또는 그 受權者)와의 면담
- ③ 일반납세인 자격심사결과 통지
- ④ 증치세「發票」의 최대발행액의 결정통지

○ 자격인정신청시에 필요한 자료

- ① 일반납세인자격관련 신청보고
- ② 영업허가증, 세무등기증
- ③ 법정대표자, 주요 경영관리자 및 재무회계 담당자의 신분증명서
- ④ 기업경영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권리증명증(產權證)
- ⑤ 은행구좌등록증명 및 등록자본금의 출자감사보고서

○ 소관 세무국의 實地 검사와 면담시에 제출하는 자료

세무국 담당자는 실지검사시 상기자료 ③④⑤의 원본 외에 하기자료의 원본에 대해서도 검사를 행하고 모든 자료가 원본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복사본, 상업기업의 사인을 날인하여 세무국 내부심사자료로 가져간다.

- ① 상품매입처와 상품매입 관련 계약서(협의서)
- ② 상품판매처와 상품판매 관련 계약서(협의서)
- ③ 창고(물류)업무 위탁계약서(협의서)

* 세무국은 상기 ①②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금액으로부터 기업의 1년간 판매액이 180 만元に 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세무국의 납세 지도기간

신설 상업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납세인 자격인정과 함께 반년간의 납세지도 기간이 설정된다. 상기 지도기간 종료후 세무국은 (1) 납세평가 결과의 정상 여부 (2) 면담, 實地검사 결과의 정상여부 (3) 납세신고, 납세액의 정상여부 (4) 매입증치세, 매출증치세액의 계산이 정확하고, 증치세 전용發票와 기타 합법적인 매입증치세의 공제증빙 발행과 취득의 정확성 여부 등 4 항목을 검사하여, 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식으로 일반납세인자격을 부여한다.

2) 신설 상업기업의 일반납세인 인정 관련 주요 통지내용

○ 신설 상업기업의 증치세징수의 관리강화 관련문제에 관한 긴급통지
(國稅發明電 [2004]37 호, 2004 년 7 월)

일반납세인 인정을 위해서는 연간 180 만원 이상의 매출실적 달성이 필수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자본으로 상업기업을 설립하여 일반납세인의 가인정을 받아 증치세전용발표를 취득후,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탈세예방 목적으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신설 상업기업들로부터 매출실적 확보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정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 신설상업기업의 증치세징수의 관리강화 관련문제에 관한 보충통지
(國稅發明電[2004]62 호, 2004 년 12 월)

연간 180 만원의 거래실적이 없는 상업기업도 세무국과의 면담 및 회사의 실태확인을 거쳐 처음부터 일반납세인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 보충통지에 의한 조건의 완화 요건 】

- 첫번째 연도부터 「일반납세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상업기업의 조건
 - ① 고정영업장소와 상품재고를 보유하고 등록자본금 500 만元 이상, 종업원 50 인 이상의 중대형상업기업
 - ② 경영규모가 비교적 크고 고정된 경영장소와 매입 판매루트를 보유하며, 또한 정비된 관리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을 보유한 중대형 상업기업
- ①의 경우, 지도기간이 부과된 일반납세인으로 가인정하고 가인정후는 세무국이 지도기간이 설정된 일반납세인관리를 행하며, 지도기간 종료후 주관세무기관의 심사인가를 거쳐 정식으로 일반납세인자격을 취득한다.
- ②의 경우, 처음부터 정식으로 일반납세인 자격을 부여한다.
- 상기 ①,②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신설 상업기업의 경우 세무등기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판매액이 180 만元에 도달하면, 일반납세인자격의 가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기업이 신고한 자료 및 실제의 경영·납세 상황에 대해 심사를 행하고 조건에 부합되면 납세지도기간이 설정된 일반납세인 자격을 가인정하고, 지도기간종료후 소관세무기관의 심사인가를 영유해 정식으로 일반납세인으로 인정한다.

【 소규모 납세인 자격 「상업기업」의 증치세 부담비용 】

- 신설 소규모 상업기업은 회사설립후(세무등기일 기준) 1 년간은 증치세發票를 발행할 수 없는 소규모납세인으로 거래활동을 해야 하며, 일반납세인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180 만元의 매출실적액의 달성이 의무적이다.
- 소규모납세인은 매입(수입의 경우도 포함)시 지불한 17% 매입증치세액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납세인은 매출액에 대해 4%의 증치세를 지불해야 하나, 구매고객(일반납세인일 경우)은 이 4%를 매입증치세로 공제할 수 없어(매입증치세 공제는 수령하는 증치세 전용發票가 기준이 되나, 소규모 납세인은 증치세발표를 발행할 수 없음), 이 4%는 구매고객에게 넘기지 못하고 소규모납세인이 대신 납세해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납세에게는 매입증치세액 17%와 매출액의 4%가 자기부담이 된다.
- 신설상업기업이 180 만元의 매출실적을 달성하기까지 소규모 납세인으로 영업하는

경우(거래상대를 일반납세인으로 가정) 요구되는 증치세 비용은 약 33 만元に 달한다.

[사례: 상품을 180 만元に 사입하여 이를 그대로 180 만元に 판매하는 경우]

- ① 공제불능 매입 증치세납세액: $180 \text{ 만元} / 1.17 \times 17\% = 26.15 \text{ 만元}$
 - ② 매출증치세납세액: $180 \text{ 만元} / 1.04 \times 4\% = 6.92 \text{ 만元}$
 - ③ 소규모납세인으로서 판매시 세금부담: $26.15 + 6.92 = 33.07 \text{ 만元}$
- 결론적으로 소규모납세인은 일반납세인 전환기준인 연 180 만元の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약 33 만원의 증치세를 비용으로서 부담하게 된다. 즉, 소자본으로 상업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납세인으로서 정상적인 도매거래를 하려면 최소한 33 만원의 증치세를 여분으로 납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금 】

구분	종 류
소득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유통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자원세	자원세
특별목적세	토지증치세
재산세	도시부동산세
행위세	계약세, 인지세, 차량구입세
기 타	관세, 특별수입조정세

제 4 장 상업기업 관련 수속

1. 상업기업 신설

1) 상업기업설립 관련 유의사항

○ 경영범위 설정

경영범위 설정에는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Feasibility Study: 이하 「F/S」)상에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도매업을 할 예정이나, 장래에 소매업에도 진출할 것에 대비하여 별다른 근거도 없이 소매업을 경영범위에 기재할 경우, 심사기관의 허가를 득하기 어렵다.

경영범위에는 취급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한다. 그러나, 경영범위의 대상제품과 서비스내용의 폭을 제한시켜 놓을 경우, 장래에 사업의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반대로 포괄적으로 기재해 놓으면 심사인기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요구받기 때문에 자사 사업의 내용과 발전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영범위를 설정 할 필요가 있다.

경영범위 설정시는 도매, 소매 및 수출입상품의 구체적인 리스트업이 필요하다.

○ 사업계획과 등록자본금

투자총액(등록자본금+차입금)은 사업달성을 위해 필요한 총 소요금액이며, 상업기업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금 성격임을 감안하여 설정이 필요하다.

투자총액과 자본금의 차액은 차입한도액이며, 투자총액 전액까지 차입해야 할 의무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차입한도를 최대규모로 설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 「투자총액-자본금=차액부분=차입한도」

【 투자총액에 점하는 자본금 비율 규정 】

투자총액	3 백만불 이하	300-1,000 만불	1,000-3,000 만불	3,000 만불 초과
자본금의 최저 비율	70% 이상	50%이상 (최저 210 만불)	40% 이상 (최저 5 백만불)	1/3 이상 (최저 1,200 만불)

(자료) 중외합자기업의 등록자본 및 투자총액의 비율에 관한 잠정규정(1987.3.1)

○ 외국투자자의 조건

8 호령 6 조에는 「신용도가 높고, 경제력을 갖추고 선진 유통관리 경험 및 마케팅 기술, 국제네트워크를 구비한 외국투자자의 외자상업기업 설립을

장려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진출을 원하지 않는 분야의 상업기업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심사과정에서 외국투자가가 영세하거나 낙후된 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비준취득이 어려울수도 있으므로 신청서류 작성시 자사의 실력과 취급품목의 유망성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2)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Feasibility Study; 가행성 보고서) 작성

F/S는 정해진 포맷은 없으며, F/S 상에 5개년간의 사업계획, 자금계획을 기술하도록 요구된다. F/S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심사비준 당국이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사업규모에 합치되는 투자총액과 자본금 설정의 적정성 여부이다.

【 작성 포인트 】

(1)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투자소요액의 산정

투자소요액의 구성요소는 ①운전자금 ②설비투자자금 ③개업비 및 무형자산투자 등이 있다.

- ① 운전자금: 취급예정인 상품별 사입/판매단가·수량·지불/대금 회수기간, 재고기간 등을 고려한 금액. 대략 계산해 5년간의 평균 월매출액의 약 3개월분 정도에 해당
- ② 설비투자자금: 사무기기 등
- ③ 개업비 및 무형자산투자: 사무소 임대차계약, 영업허가증 취득후의 각종 등기/신청비용 등

(2) 투자소요액의 자금조달방법

등록자본금의 출자방식, 불입기한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3) 사업 계획(약 5년간)

제반 경비(노무비, 감가상각비, 시설비, 사무소·점포임대비, 광고비, 물류비 등)의 계획과 캐쉬플로우, 손익계산서 등의 작성이 필요하다.

(4) F/S의 주요 항목

- 프로젝트의 신청근거
- 프로젝트개황: 회사명, 법정주소, 기업형태, 경영기간, 경영범위, 경영규모,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액, 출자방법과 불입 기한
- 투자자개황: 회사명, 법정주소, 법정대표자명, 회사실적 등의 설명
- 프로젝트의 의의와 필요성
- 시장동향과 향후의 전망
- 사입/판매방식과 계획
- 상표사용에 관한 설명
- 회사설립지와 고정자산투자에 관한 설명

- 종업원 구성과 회사조직도
- 경제분석: 재무, 투자관련, 손익관련의 각 분석
- 사업타당성조사에 관한 최종결론

3) 상업기업설립 신청과 영업허가증 취득

○ 상업기업설립 등기장소의 결정과 임대차(또는 구입)협약서의 체결

생산형기업을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업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도 우선 첫단계로 등기장소의 확보가 필요하다. 도매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상업지역의 오피스빌딩을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백화점과 같이 소매권을 보유한 물건에 검포개설 예정인 경우는 동 점포를 통해 백화점에 상품을 도매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도매기업을 설립한다). 소매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점포를 임대해야 한다.

임대차(또는 구입)협약을 체결할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오피스빌딩 주인이 임대차자격이 있는가 여부이다. 법인의 등기주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물건이 상업기업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을 협의서내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상업기업의 기업명칭 가등기

상업기업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공상행정관리국에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명칭의 가등기가 필요하다.

【 기업명칭 관련 유의사항 】

- 기업명칭은 일반적으로 「상호+지역명+업종+기업형태」로 구성된다. 상업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종을 「商貿」 및 「상업」으로 해야 상업기업이라는 것이 명확해 진다.
 - 商貿: 도매기업 명칭 (예: ○○상해商貿유한공사, 또는 상해○○商貿유한공사)
 - 상업: 소매기업 명칭 (예: ○○상해商業유한공사, 또는 상해○○商業유한공사)
- 기업명칭은 한자를 사용해야 하며, 한자의 拼音(한자의 알파벳표지) 및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기업 이외에는 기업명칭에 「중국」「중화」「전국」「국가」「국제」등의 문자를 맨앞에 쓰면 안된다.
- 외국출자기업의 문자를 사용하는 외자獨資기업 및 외국측이 지배권을 보유한 외국투자기업은 명칭의 중간에 「중국」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업명칭중 업종에 관한 용어가 표현되는 내용은 기업의 경영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 심사 인가수속 및 비준증서(설립인가증)의 취득

종전에는 중앙의 상무부에서 심사인가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초보심사 1 개월, 상무부심사에 3 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2006 년 3 월부터 대부분의 심가인가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양되어 1 개월 정도로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 상해시의 외자상업기업 설립 인가수속 】

〔 지방정부 심사비준 권한 〕

- 도매기업
외상투자기업의 주관부문인 상해시 외국투자공작위원회에서 신청수리가 행해지며, 제출된 신청서류가 완비되어 있는지, 신청내용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심사가 행해진다. 인가되면 비준증서가 발행된다.
- 일반 소매기업
국내상업영역주관부문인 상해시 경제위원회에서 신청수리가 행해지며, 서류의 완비상황, 국내판매에 관한 신청내용의 심사가 행해진다. 경제위원회로부터 인가회답서를 발급받고 필요서류를 추가하여 상해시 외국투자공작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인가가 종료되면 동 위원회로부터 프로젝트 인가회답서와 비준증서를 수령한다.
- 대규모 소매기업 (중앙 상무부가 인가권한 보유)
상해시 경제위원회는 초보적인 심사를 행한 후, 「상해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계획)의 요구에 부합된다는 취지의 문건」과 상무부행 송부장을 작성하여, 중앙 상무부로 전송한다.

〔 상무부 심사비준 권한 〕

2006 년 3 월 1 일부로 상업기업 인가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양되었지만, 특정 업태, 품목 및 대규모 소매기업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무부에서 심사인가가 필요하다.

- 도매기업
상무부로 전송된 신청서류는 外資司에서 수리되어 심사인가가 행해지며, 「상무부의 ○○○(상해)商貿유한공사 설립에 관한 인가회답서」가 상해시 외국투자위원회 앞으로 발행된다. 그 인가회답서를 가지고 상무부 외자사에 비준증서를 취득신청하여 수령한다.
- 소매기업
국내판매관련 주관인 상무부 市場建設司에 서류가 전송되며, 심사를 받게된다.

인가되면, 市場建設司로부터 「상무부의 ○○○(상해) 商貿 유한공사 설립에 관한 인가회답서」가 상해시 외국투자위원회 앞으로 발행된다. 그 인가회답서를 가지고 상무부 외자사에서 비준증서를 취득신청하고 수령한다.

○ 영업허가증의 취득

설립인가기관으로 부터 비준증서가 발행되면, 영업허가증은 원칙적으로 기업설립등기지에 있는 성,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이 발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허가증의 교부를 신청한다.

단, 상업기업의 경영범위내 취급상품중 해당 업계의 개별 취급허가증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상업기업의 영업허가증에는 「(준비기간중)」으로 기재되어, 1 년의 유효기간 조건으로 발행된다. 이 기간중에는 취급허가증이 필요없는 취급상품만 영업이 가능하다. 1 년의 유효기간내에 유자격자의 고용 등 조건을 정비하여 관계부문에 취급허가증의 취득을 신청하고, 취급허가증 취득후에는 영업허가증의 경영범위내 「(준비기간중)」의 기재를 말소하는 수속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 식품위생허가증 등 일부의 경영허가증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 사전취득이 요구되고 있어, 이 경우,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경영범위로 미리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 영업허가증 「(준비기간중)취득후에 필요한 경영허가증의 종류 】

- 식료품, 음료의 경영: 주관위생부문의 「식품위생허가증」
- 약품/의료기기/제약설비의 경영: 주관약품감독관리국의 「허가증」
- 음식서비스: 주관위생부문의 「허가증」
- 상업성네트워크정보서비스: 정보산업부문 및 전신관리기관의 「경영허가증」
- 주류의 도매/소매: 주류전매국의 「허가증」
- 자동차의 정비: 교통주관부문의 「비준문서」와 「기술합격서」

【 상업기업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 】

(1)기업명칭 가동기

기업명칭 사전심사 인정신청서(공상행정관리국 지정 양식)

(2)기업설립 신청

- ① 외상투자상업기업설립신청서(당국 지정양식)
- ②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F/S)
- ③ 정관 및 부속서류(상표사용허락 계약 등)
- ④ 외교통상부와 중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은 투자자의 기업등기부등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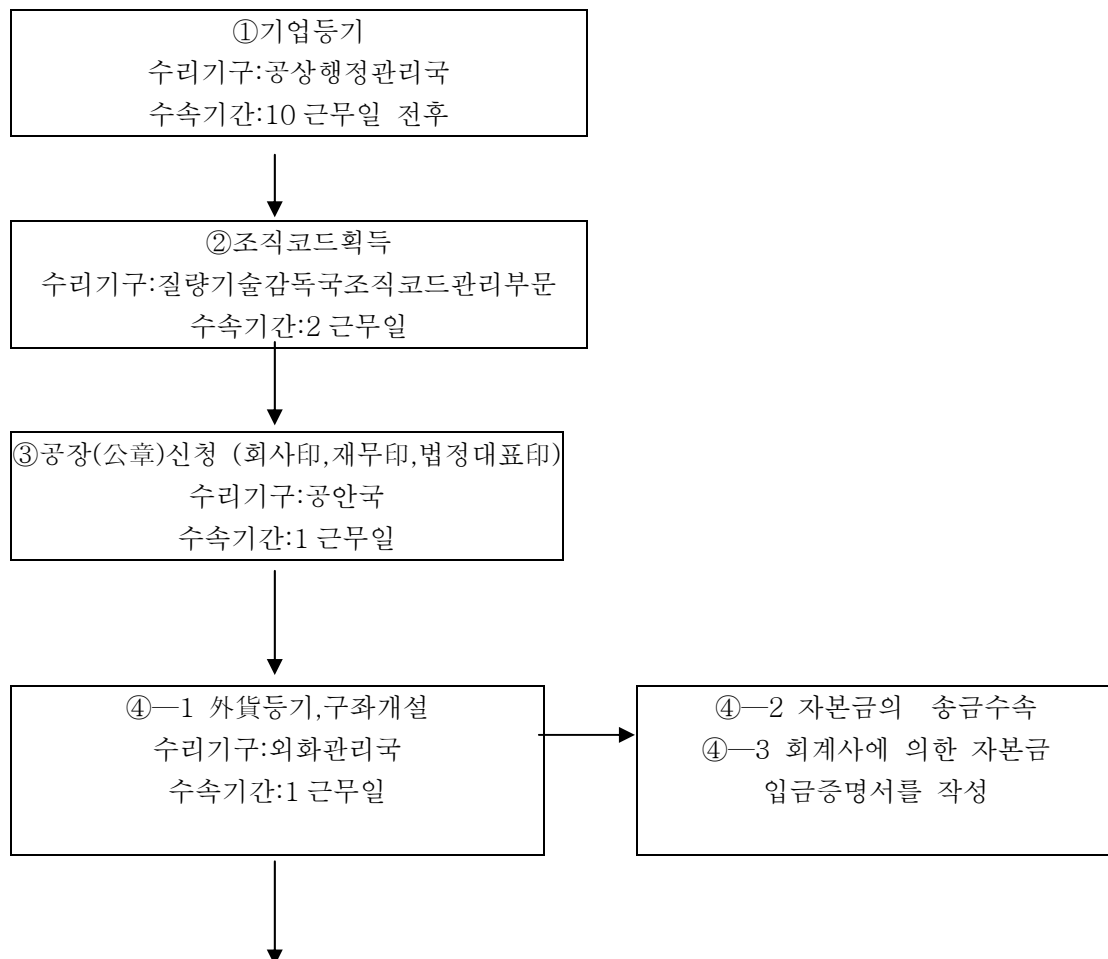
- 거래선은행발행의 자본신용증명서, 법인대표자 여권복사본
- ⑤ 공인회계사 사무소의 감사가 종료된 투자자의 가장 최근년도의 결산감사보고서
 - ⑥ 상업기업의 수출입상품목록
 - ⑦ 이사회구성원리스트 및 이사 임명서
 - ⑧ 기업명칭 사전심사인정통지서 [상기 (1)로 취득]
 - ⑨ 기업설립등기주소의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물건 임대차계약, 부동산권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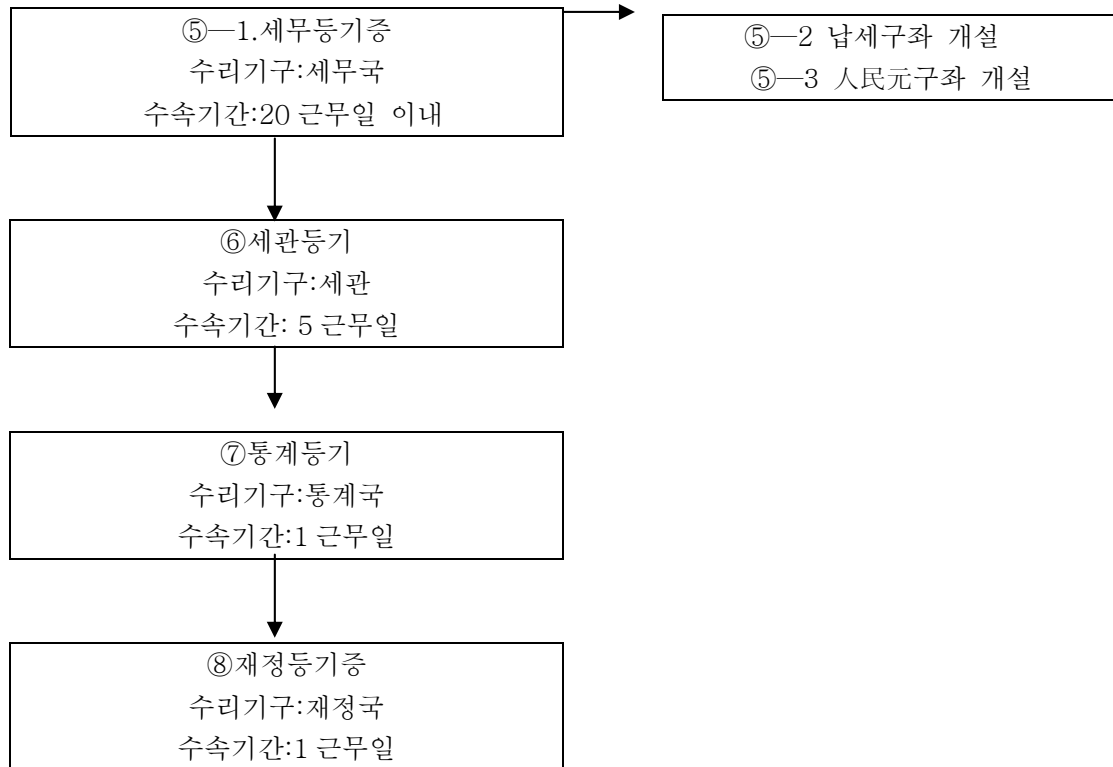
(3)기업설립 등기

- ① 외상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공상행정관리국 지정양식)
- ② 기업설립인가기관이 발행한 인가문서, 비준증서
- ③ 상기 (2) 중 ③④⑦⑧⑨의 서류
- ④ 이사장의 증명사진 2 매(3X4 인치)

4) 상업기업 설립후의 각종 등기

상업기업 설립인가가 나고 영업허가증 취득으로 부터 공상행정관리국의 기업등기, 여러 관계기관의 등기완료까지는 2-2.5 개월이 필요하다(업계별 취급허가증의 신청 취득 제외).





(주) 상해시의 경우

【 설립 인가의 흐름 】

「도매기업」

	중앙 상무부 인가 대상	지방정부 인가 대상	소요 기간
①	회사설립 신청 서류준비	회사 설립신청 서류준비	
②	기업명칭 가등기	기업명칭 가등기	1~2 주
③	회사 설립신청	회사 설립신청	1 ~2 개월
⑥	상무부 앞 송부장 발행	-	
⑨	상무부의 인가문서 발급 및 지방정부로 인가 회답서 내도	-	1.5~3 개월
⑩	회사 설립 등기신청	회사설립 등기신청	1~2 주

「소매기업」

	중앙 상무부 인가 대상	지방정부 인가 대상	소요 기간
①	회사설립신청 서류 준비	회사설립신청 서류준비	
②	기업명칭 가등기	기업명칭 가등기	1~2 주

③	회사 설립신청	회사 설립신청	2 주~1 개월
④	지방상업영역 주관부문에 신청서류 이송	지방상업영역주관부문에 신청서류 이송	
⑤	지방상업영역주관부문의 사전 동의서 발행	지방상업영역주관부문의 사전 동의서 발행	
⑥	상무부 앞 송부장 발행	-	
⑦	상무부 상업영역 주관부문으로 신청서류 이송	-	1.5~3 개월
⑦	상무부 상업영역 주관부문으로 신청서류 이송	-	1.5~3 개월
⑧	상무부 상업영역주관부문의 인가문서 발행	-	
⑨	지방정부로 인가 회답	-	
⑩	회사 설립등기신청	회사설립 등기신청	1~2 주

2. 생산형기업의 경영범위확대 수속

1) 경영범위확대 수속의 흐름

- ① 경영범위가 확대된 新「비준증서」의 취득
- ② 변경등기수속과 新「영업허가서」의 취득
- ③ 新영업허가서취득후 「변경 등기수속」

2) 유의 사항

○ 신청기업의 계약서, 정관의 수정

경영범위확대시는 다음과 같이 투자자 내부의 승인수속 및 외자기업법, 합자경영기업법에 근거하여 신청기업에 관한 계약서, 정관의 수정수속을 행할 필요가 있다

- 신청기업이 합자기업일 경우는 합자계약서의 수정에 합자기업투자자 쌍방이 비준하여, 합자기업의 동사회에서 정관변경에 대해 승인절차를 거친다.
- 신청기업이 獨資기업인 경우는 투자자의 내부승인 수속을 거친후, 독자기업의 동사회에서 정관변경에 대해 승인절차를 거친다.
- 외자기업법, 합자경영기업법에는 합자계약서의 수정 및 정관의 변경은 심사인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신청하지 않고 당초의 심사인가부문을 경유하게 된다. 신청표 및 사업계획 개요 등을 지참하여 원래의 심사인가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준증서의 교환

경영범위확대가 인가되면 새로운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비준증서와 교환하게 된다. 새로운 비준증서를 수령후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새로운 영업허가증의 교부를 받는다.

3. 보세구무역기업의 경영범위확대 수속

1) 경영범위

도매, 소매업무의 경영범위기재: 원칙적으로 1-5 종의 품목을 기재할 수 있으며, 세관의 稅則번호를 기준한 품목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

- 도매업무의 경영범위: ○○○ 상품의 도매, 커미션판매대리(경매제외), 수출입 및 기타 부대업무
- 소매업무의 경영범위: ○○○ 상품의 소매, 자영상품의 수입, 중국내상품의 매입수출 및 기타 관련부대업무

2) 原경영범위의 삭제

원래의 경영범위는 그대로 유지되나, 도매, 소매의 경영범위를 추가할경우, 원래 경영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입경영권을 보유한 국내기업과의 대리계약을 통한 非보세구무역기업과의 무역업무 종사」 및 「화물 및 기술의 수출입(국내판매와 국가가 금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의 내용은 추가되는 경영범위와 상충되므로 삭제하여 신청한다.

제 5 장 관련 자료

【 상업기업 설립용 】

1. 스타商貿유한공사의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

< 목 차 >

第一章	총론
第二章	투자업체 소개
第三章	시장수요 전망
第四章	스타 무역과 판매 경로
第五章	스타는 중국내 경쟁력 보유업체
第六章	제품 판매 및 외화 밸런스
第七章	환경보호
第八章	기업조직구조
第九章	직원 및 노동보호
第十章	투자 추산 및 재무분석
第十一章	결론

第1章 총론

한국 스타무역(Star Trading Co.Ltd.)은 중국시장 개척과 현지 경제발전을 위하여 상해지역에 독자투자업체를 설립할 예정이다.

한국 스타 회사는 1991 년 7 월 설립, 등록자금이 한화 10 억원 에 달한다. 현재 한국 여성복 제조업에서 상류기업에 속한다. 동사는 LIVE, BLEU 등 한국 유명 브랜드가 있으며 2004 년 판매액이 한화 1,262 여억원(10.55 억위엔)에 달했다. 상기 브랜드는 2000 년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생 략)

一、경영방식

외자 독자경영 방식으로 상업 도매와 소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예정

二、외자독자투자업체 명칭 :

공상행정관리국의 비준을 결친 회사 명칭: 스타(상해) 商贸有限公司(이하 「회사」로 약칭)

三、회사 등록지역

上海市浦东新区○○路 ○号○○室。

四、법인대표자

○○○ (한국)

五、회사 목적

시장개척, 업무추진, 브랜드 이미지 확보로 상업이익 취득

六、투자액

투자총액 60 만불, 등록자본금 60 만불. 미화 현금 송금방식으로 출자

七、경영범위

의류, 신발, 모자, 피혁제품, 섬유제품, 장신구, 공예품 등의 수출입, 도매, 소매 및 관련 기술 수출입무역

八、경영규모

연간 판매량 3.4 亿元

창고면적 : 4178.34m²

九、전문점 주소

전문점 개설 예정 주소 :

1. 上海时代广场 (LIVE 브랜드), 上海市淮海中路○○号 ;
2. 上海梅陇镇伊势丹 (LIVE 브랜드), 南京西路○○号 ;
3. 上海八佰伴 (BLEU 브랜드), 张杨路○○号。

회사 비준후 상기 전문점 주소의 관련 비준과 구체적인 업무 추진

十、경영시간

30 년. 연장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기관에 연장 신청예정

十一、출자기한

등록자본은 영업집조 발급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1 회로 출자한다. 출자후 중국 회계사가 출자 검사를 하고 출자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사는 이에 근거하여 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자 증명서 내용 : 회사명칭, 설립일자, 투자자이름, 출자액, 출자일자, 출자 증명서 발급 일자 등

十二、시장분석 및 투자 이유

중국은 세계 최대 의류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 규모는 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스타 패션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요 소비층은 젊은 여성이다. 각종 브랜드 의류는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절하며, 유럽, 미국, 일본 패션에 비해 중국 소비자에게 더 잘 어필된다.

(생 략)

스타는 창의력 있는 디자인을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게 설계하고 있다. 치열한 시장경쟁속에서 회사는 패션업의 발전수요와 커다란 시장잠재력에 근거 2,000 여종에 달하는 패션제품을 출시하여 보다 많은 전문점을 설립할 예정이다. 향후 5 년동안 중국내 연간 판매액이 10-15 억원에 달해 중국 최대의 패션 도매와 소매기업으로 부상할 것이다.

第二章 투자업체 소개

一、투자자 명칭

한국 스타 (Star Trading Co.,Ltd.)

법적주소: 서울시 ○○구

법정 대표자 : ○○○

국적 : 한국

二、회사소개

한국 스타는 1991 년 7 월 설립 현재 자본금 한화 10 억원으로 여성복 제조업체중 상류기업이다. 한국 유명 브랜드로 LIVE, BLEU 등이 있으며 2004 년 판매액이 한화 1,266 여억원에 달했다.

(생 략)

회사에는 2004 년 12 월 기준 543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본사 직원은 220 명이다.

회사는 첨단적인 기술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가운데 회사 연구소의 기술직 사원은 모두 관련 업종에서 10 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급인재들로 회사 장기적인 발전에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第三章 시장수요 전망

(생 략)

의류 산업의 최대 도전은 창조력과 브랜드 경쟁력이다. 단순히 노동력 자원에 근거한 경쟁력은 점차 감소되어 향후 5-10 년동안 의류 산업 경쟁력은 원가, 품질, 창조력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 제품은 중국내 커다란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점은 이미 중국시장에서의 실적이 증명해 주고 있다. 중국 유망한 투자환경에 힘입어 스타는 최대한 무역원가를 줄이고 시장판매력을 증가시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성의 확대목표를 실현할 예정이다.

第四章 스타 무역과 판매 경로

스타 (上海) 商贸有限公司사는 중국내 공급과 OEM 생산으로 중국내 판매수요의 70%를 해결할 계획이다. 한국 스타로부터는 30%의 고급 원단을 대외무역 방식으로

대리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입할 계획이다.

전문점 형식은 경쟁적인 지역제한을 받지 않고 판매루트를 확보하는데 유리하여 점차 많은 의류 브랜드 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회사가 출자하거나 또는 가맹자와 합작하여, 전문점의 상호, 상표 및 기타 영업을 상징하는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동일 브랜드 의미지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추진예정이다.

(생략)

LIVE 전문점 (2005 年 05 月 31 日 기준)

[금액단위: RMB]

전문점명			개업일자	월판매액
1	上海	汇美百货	2004 年 09 月 10 日	310,000
2	深圳	紫荆城商业广场	2004 年 09 月 18 日	460,000
3		金光华广场	2004 年 11 月 20 日	279,000
4		万象城 NOVO CONCEPT	2005 年 01 月 21 日	242,000
5	广州	友谊总店	2004 年 09 月 25 日	249,000

(생략)

스타 (上海) 商贸有限公司사는 브랜드 지정 생산 전략으로 기존 판매망과 향후 개설할 전문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지향적으로 마케팅활동과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점을 제품판매, 정보 수집, 애프터서비스, 시장마케팅 등 다기능 영업 센터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사의 시장경쟁력은 미래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것이며, 중국 고급 패션의류의 모델로 부상할 것이다.

第五章 스타는 중국내 경쟁력 보유업체

一、스타 창고저장 배송 시스템

1.1 창고주소: 上海市闵行区莘庄工业区○○路

1.2 창고기획

창고는 제 3, 제 4 두층으로 총면적 4178 평방미터이다.

높이: 3층은 3.7미터, 4층은 4.3미터, 주차용량은 21 대, 24 시간 보안 경비, 100Kv 전력 수송, 통신 기초시설 건설 완료, 256 개 전화용량

(생략)

판매 경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회사의 핵심 경쟁력중의 하나이다. 즉 스타 의류 판매경로는 주로 1、分公司 또는 대리상 2、전문점 또는 가맹점 3、백화점 전문 매장이다. 상기 3 개 종류의 판매기구는 역할과 기능면에서 각자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分公司 또는 대리상은 지역의 창고저장 센터, 배송센터, 관리센터의 역할을 한다. 전문점 또는 체인점은 프랜차이즈로 직접 소비자와 상대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며 소비 구매를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생략)

二、기존 스타 브랜드 중국 진출에 있어서 강제 판매와 실적

스타는 중국기업에 위탁하여 10 여개 大中도시에 완벽한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2004 년 누계 판매액은 10, 442 만원에 달했다. 스타가 중국대리상을 통해 경영하는 전문점은 25 개이다. 따라서 스타의 LIVE, BLEU 브랜드는 중국시장에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로 부상하며, 미래에 중국 고급 패션의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第六章 제품 판매 및 외화 밸런스

一、제품 판매

스타 제품 판매는 중국 내수 시장 위주이다. 회사는 시장수요와 기업경영 상황에 따라 판매량을 조정한다.

二、외화 밸런스 및 외화 수지 계획

회사는 경영에 필요한 외화는 중국외화관리규정에 따라 자체 해결하며 외화 밸런스를 유지한다.

第七章 환경보호

一、본 항목은 실행과정에서 국가와 상해시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된다

二、산출되는 오염물 및 처리

- 1、폐수: 없음
- 2、폐기: 없음
- 3、폐기물: 없음
- 4、폐기물: 없음

第八章 기업조직기구

一、이사회

회사는 <중국외자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과 <중국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관련 규정에 근거, 이사회가 전문점의 모든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이사회 성원은 스타(上海) 商贸有限公司 정관 규정에 따른다.

二、경영관리기구

(생략)

회사 이사회 아래 경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총경리는 이사회에 책임지고 이사회 지도하에 업무를 진행한다.

스타(上海) 商贸有限公司사는 총경리 1 명을 투자자측에서 임명한다. 총경리는 이사회 위임을 받은 후, 전문점장 등 기타 고급 관리인원을 지정한다.

第九章 직원 및 노동보호

一、인원구성

1、직원

초기 50 명 모집(전문점 직원은 불포함) 회사 발전 수요에 따라 100 명 정도로 증원예정이다.

(생략)

2、직원 고용 및 훈련

회사직원은 전부 공개 모집하며, 특수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 훈련을 진행한다. 정기적으로 직원을 선정하여 한국에 파견, 경영훈련을 시킨다.

二、노동보호

1、취지

종업원 안전과 신체건강을 보호하고 회사 재산안전을 보호하며 판매효율을 높인다.

2、안전보호조치

- A、특수 위치에 관련 안전 표식과 안전장치 설치
- B、의류 및 장신구는 전문 창고를 지정
- C、필요한 노동보호 도구를 지급
- D、정기적으로 종업원을 상대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진행

3、소방

창고, 전문점, 경영장소 통로, 통풍, 전기설치, 소방 기자재 등은 관련 부문의 소방요구에 따른다.

第十章 투자 추산 및 재무분석

一、투자액

항목 총 투자액 60 만불이다. 100% 즉시 달러 현금으로 투자한다. 이중 창고 건설비는 25 만불, 기타는 전문 경영에 쓰인다.

二、재무분석

1、이윤예측 (단위: 만원)

항목 \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영업수입	17, 000	34, 000	68, 000	109, 000	130, 800
영업원가	12, 410	24, 820	49, 640	79, 570	95, 484
관리비용	1, 870	3, 060	4, 760	7, 630	9, 156
경영비용	2, 890	5, 780	11, 560	14, 170	17, 004
납세액		26	306	1, 145	1, 373
이윤	-170	340	2, 040	7, 630	9, 156

2、투자 회수기는 2.1 년으로 예정

第十一章 결론

상술한 바와 같이 스타는 의류, 장신구 도매와 소매의 외자 독자 투자 업체로 해외의 선진기술설비, 서비스 기준, 관리기술을 도입하고 전문점 개설을 통해 중국 의 관련 산업 수준을 제고시키고 시장수요를 만족시키며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의 질을 제고시킨다. 한편 수출 확대와 내수 확대로 지방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취업문제 해결 등 측면에서 적극 공헌할 예정이므로 정부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비준해 줄 것을 희망한다.

투자자 : 한국 스타

법정대표자/권리 부여 대표 :

2005 年 月 日

2. 주요 법령

① 외국인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상무부령 2004년 제8호 (상무부 2004년 4월 16일 공포, 2004년 6월 1일 시행)

제 1 조 외국에 대한 개방을 더욱 촉진시키고, 시장유통 시스템의 건설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작 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및 《회사법》 등의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회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이 중국 내에 외자자본 상업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방법을 준수하여야한다.

제 3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아래에 열거한 경영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을 의미한다.

- (1) 대리업무 : 상품의 판매대리상, 대리인 또는 경매인, 또는 기타 도매상이 계약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수령하고 타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관련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2) 도매 : 소소매상, 공업, 상업, 기관 등의 수요자 또는 기타 도매상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관련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3) 소매 : 고정된 장소 또는 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가 소비사용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관련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4) 특허경영 : 보수와 프랜차이즈경영비를 취득하기 위해 계약체결을 통해 타인에게 상표, 상호, 경영모델 등을 사용토록 하는 행위

외국회사·기업, 기타경제단체 또는 개인은 반드시 중국내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을 통해서만 위의 (1) (2) (3) (4) 조항에 규정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제 4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 및 합법적 권익은 중국의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국가 상무주관부문(현 상무부)은 법에 의거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영역 및 경영활동에 대해 관리, 감독한다.

제 6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외국투자자는 신용도가 높고,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및 상관계정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경제력을 갖추고, 선진 상업경영관리 경험 및 마케팅 기술, 광범위한 국제 판매 네트워크를 구비한 외국투자자의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설립을 장려한다.

제 7 조 외국투자 상업기업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최저등록자본이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 (2) 외국투자기업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이 관련법규에 부합되어야 한다.
- (3)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경영기한은 보통 30 년을 초과하지 않고, 중서부에 설립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경영기한은 보통 40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8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이 매장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상업기업 설립 신청을 하면서 매장개설 설립신청을 동시에 할 때는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 발전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2) 이미 설립 비준을 받은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이 매장증설 신청을 할때는, (1)의 요구조항 이외에 아래의 조건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1. 정해진 시기에 외국투자기업연합 연례검사를 받고 이 검사에 합격해야한다.
 2. 기업등록자본을 모두 완납해야한다.

제 9 조 비준 후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아래의 경영 업무를 할 수 있다.

- (1) 소매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1. 상품 소매
 2. 자영으로 상품 수입
 3. 구매한 중국 내 상품 수출
 4. 기타 부대 업무
- (2)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1. 상품 도매
 2. 대리업무(경매업무 제외)
 3. 상품의 수출 및 수입
 4. 기타 부대 업무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타인에게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으로 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상업기업은 비준을 거쳐 위에 언급한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때 판매상품의 종류는 계약서나 규약서상의 경영범위관련 내용에 확실히 명시해야한다.

제 10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설립과 매장의 개설은 아래의 과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설립을 위해서는 타당성연구보고서, 기업설립 신고서, 심사비준이 필요하다.
- (2) 제 10 조 (3), (4)조항에서 따로 규정한 것 외에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설립을 하고자하는 투자자나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설립 후 매장개설을 신청코자 하는 기업은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등록지역의 성급(省級)상무주관 부문에 제 12 조와 제 13 조에 규정된 신청서류를 각각 발송한다. 성급(省級) 상무주관부문은 이 서류들에 대해 1 차 심사를 한 후 모든 신청서류가 도착한 그날부터 한 달 이내에 상무부에 보낸다. 상무부는 모든 신청서류들을 접수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비준의 여부를 결정하고 비준 허가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를 하 달하고, 비준거부 기업에 대해서는 거부

원인에 대해 설명해야한다. 상무부는 본 시행법에 근거하여 성급(省級) 상무주관부문에 상술한 신청의 심사·허가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 (3) 소매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이 소재지 성급행정구역내 매장 개설시 만약 아래조건에 부합되고 경영범위가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동판매기 판매 그리고 본 시행법 제 17 조, 제 18 조에 열거된 상품과 관련이 없으면 해당 성급(省級) 상무주관부문이 심사비준권한 내에서 심사,비준한 후 상무부에 보고한다.
 1. 단일 매장의 영업 면적이 3000m²를 넘지 않고 매장 수가 3 개를 넘지 않으며 이 외국인투자자가 기설립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 개설한 같은 종류의 매장의 총 수가 30 개를 넘지 않을 때
 2. 단일 매장의 영업면적이 300m² 를 넘지 않고 매장의 수가 30 개를 넘지 않으며 이 외국인 투자자가 기설립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 개설한 동종의 매장 총 수가 300 개를 넘지 않을 때
- (4) 中外합자, 합작상업기업의 상표, 상호의 소유자가 중국본토기업이거나, 중국자연인이고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최대주주가 중국인 투자자일 때, 그리고 이 기업의 경영범위가 본 방법 제 17 조, 18 조에 열거된 상품과 관련이 없을 때 이 기업의 설립 및 매장 개설 신청은 기업 소재지의 성급(省級) 상무주관부문이 심사비준 권한 내에서 심사비준한다. 만약 그 성 외에 다른 성에도 매장 개설을 원할 경우 해당 성의 성급(省級) 상무주관부문의 의견을 따로 구해야한다.

상무부의 권한부여 없이 성급(省級)상무주관부문은 제 10 조 (3), (4)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권한을 자체적으로 이양할 수 없다.

제 11 조 투자자는 비준증명서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에 의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가서 등기수속을 밟아야한다.

제 12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설립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해야한다.

- (1) 신청서
- (2) 투자 당사자들이 공동 서명한 타당성연구보고서
- (3) 계약서와 규약서(외자상업기업은 규약서만 보냄) 및 관련 첨부 문서
- (4) 투자 당사자들의 은행자산신용증명서, 등록자본증명서(복사본), 법정대표인증명서(복사본), 외국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 (5) 투자 당사자들이 회계사무소를 통해 회계심사한 회계심사보고서
- (6) 중외합자, 합작상업기업에 투자를 하고자하는 중국투자자의 국유자산평가보고서
- (7)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고자하는 기업의 수출, 수입상품 목록

- (8)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고자하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투자자 각측의 이사 임명장.
- (9) 공상행정관리부문 작성, 발행한 기업명칭사전심사비준 통지서.
- (10) 매장개설을 하고자하는 토지의 사용권 증명서류(복사본) 및(혹은) 건물임대협의를서(복사본) 단, 영업면적 3000m²이하의 점포는 제외.
- (11)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소재지 정부상무주관부문이 작성 발행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요구에 부합된다는 설명서류. 비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서류는 법정대표인의 권한위임서를 제출한다.

제 13 조 외국인투자 상업회사를 이미 설립한 기업이 매장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에 열거된 서류를 발송해야한다.

- (1) 신청서
- (2) 계약서, 규약서와 관련하여 수정을 하였을 경우 수정된 계약서와 규약서 발송
- (3) 매장개설 타당성연구보고서
- (4) 매장개설에 관한 이사회 결정
- (5) 기업의 최근 1년 회계심사보고서
- (6) 기업자본심사보고서(복사본)
- (7) 투자 당사자들의 등기등록증명서(복사본), 법정대표인증명서(복사본)
- (8) 매장개설을 원하는 토지의 사용권리증명서류(복사본) 및(혹은) 건물임대협의를서(복사본) 단, 영업면적이 3000m²이하의 매장은 제외
- (9) 매장을 개설하고자하는 소재지 정부가 발행한, 도시 발전 및 도시상업 발전 요구에 부합된다는 설명서류. 비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서류는 법정대표인의 권한위임서를 받아 제출해야한다.

제 14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이 체결한 상표 및 상호 사용허가계약, 기술이전계약, 관리계약, 서비스계약 등 법률 서류는 계약별첨자료(외자상업기업은 규약서 별첨자료로서)로서 함께 발송해야 한다.

제 15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점포 개설에 사용되는 토지는 국가의 토지관리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개입찰 또는 경매, 공시 등의 방식으로 상업용지를 취득해야한다.

제 16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이 국가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품목 및 쿼터품목, 허가증 관리품목의 수·출입 상품을 취급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야한다.

제 17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취급품목이 아래 품목에 해당할 경우 본방법규정에 부합되고 동시에 아래에 열거한 규정에 역시 부합되어야한다.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이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을 취급할 경우 《외국인투자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판매 기업관리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이 주유소를 경영하며 정제유 소매영업을 할 경우 안정적인 정제유 공급 경로를 구비해야 하고, 해당 지역 주유소 건설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영시설은 현행 국가표준과 계량검정규정에 부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소방, 환경보호 등의 요구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시방법은 상무부가 따로 제정한다.

약품을 판매하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국가의약품판매관련관리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체적 실시방법은 상무부가 따로 제정한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비준 받은 경영 범위 내에서 경영해야 한다. 구체적 실시방법은 상무부가 따로 제정한다.

제 18 조와 17 조에서 따로 규정한 것 외에 외국인이 농부산물, 농업생산재에 투자하여 상업기업을 설립할 경우 지역이나 지분비율 및 투자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2004 년 12 월 11 일전에 약품 및 농약, 농업용 비닐 등을 판매할 수 없다. 또 2006 년 12 월 11 일전에 화학비료 및 원유, 정제유를 판매할 수 없다.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2004 년 12 월 11 일전에 약품 및 농약, 농업용 비닐 및 정제유를 판매할 수 없다. 또 2006 년 12 월 11 일 전에 화학비료를 판매할 수 없다.

도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소금, 담배를 판매할 수 없고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제 18 조 한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 총(누계) 30 개 이상의 매장을 개설할 경우 만일 취급 품목이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2006 년 12 월 11 일부터 제한 취소),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정제유, 식량, 식물유, 식용설탕, 면화 등이며, 또한 이 품목들이 서로 다른 브랜드이고 공급상이 다를 때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9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이 타인에게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으로 매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했을 때 본 방법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국가의 프랜차이즈 경영활동에 대한 다른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제 20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이 경매업무를 할 경우 <경매법> 및 <문화재법> 등의 관련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상무부가 심사비준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따로 제정한다.

제 21 조 2004 년 12 월 11 일부터 외자상업기업 설립을 허가한다.

제 22 조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상업기업 및 그 매장의 설립지역은 2004 년 12 월 11 일 이전까지는 省정부소재도시, 자치구정부소재지, 직할시, 경제특구와 연해개발도시(다롄, 칭다오, 닝보, 샤먼, 선전)의 제한을 받으나 2004 년 12 월 11 일 이후 지역제한을 취소한다.

도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은 본 방법 실시일로 부터 지역제한이 취소된다.

제 23 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내에서 상업 분야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중국내 투자잠정시행규정》에 부합하여야하고 본 방법을 참고하여 수속·처리한다.

제 24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이외의 기타외국인투자기업이 본 방법 제 3 조에 열거된 경영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하고 법에 의거, 경영범위를 변경해야한다.

제 25 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 대만의 투자자가 중국의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투자하여 상업기업을 설립시 아래 규정외에 본 방법의 집행을 참조한다

- (1) 2004 년 1 월 1 일부터 홍콩, 마카오 상업서비스 제공자는 내륙에 외자 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 (2) 홍콩, 마카오 상업서비스제공자는 내륙에 소매기업 설립시 지역범위는 지급시(地級市)까지 확대되고, 광둥성에서는 현급시(縣級市)까지 확대된다.
- (3) 2004 년 1 월 1 일부터 홍콩, 마카오 상업서비스 제공자는 본 방법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내륙에 자동차 소매업무를 하는 상업기업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전 3 년동안 연간 매출액이 1 억 달러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전 1 년동안 자산은 1000 만 달러이상이어야 한다; 내륙에 설립하는 자동차 소매기업의 등록자본 최저한도는 1000 만 위엔이고, 중서부지역에 설립하는 자동차소매기업의 등록자본 최저한도는 600 만 위엔이다.
- (4) 홍콩, 마카오 영구성 주민가운데 중국국민이 내륙의 관련 법률, 법규, 규장에 의거하여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상업소매활동(특별허가경영 제외)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하고, 영업면적은 300m² 를 초과하지 않는다.
- (5) 본 조항이 규정하는 홍콩, 마카오 상업서비스 제공자는 각 각 《내륙과 홍콩간의 CEPA》, 《내륙과 마카오간의 CEPA》의 “서비스제공자” 정의와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26 조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이 업종관련협회에 가입하고 기업의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7 조 본 방법은 상무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 28 조 본 방법은 2004 년 6 월 1 일부로 시행한다.

제 29 조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 발표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시범규정법》은 본 방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外商投資非商業企業의 유통판매 경영범위 추가문제에 관한 통지
(商資函[2005]제 9 호)

「외상투자기업영역관리방법」(상무부 2004 년제 8 호령)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외상투자非商業기업의 도소매 경영범위추가의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외상투자非商業기업이 도소매를 경영범위에 추가하는 경우, 기업의 각투자자는 법에 따라 기업의 계약, 정관을 수정하고, 신청표(첨부자료참고)를 기입하여, 기업경영범위확대의 관련 법적수속에 근거하여 신청을 실시하고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교환한다. 외상투자비상업기업이 도소매를 경영범위에 추가하는 경우, 구체적인 국내판매방식(도매, 소매, 커미션대리)을 명확하게 하고 신청시 취급상품목록 리스트를 제출한다.

프랜차이즈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상업프랜차이즈경영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구체적인 요구는 별도로 통지한다.

省級의 상무주관부문은 외상투자非商業기업/투자성공사의 도소매 경영범위추가의 上級부문에 대한 신청표(첨부자료-3)을 기입해야 한다.

외상투자非商業기업이 도소매를 경영범위에 추가하고 또한 소매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및 신규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에 非自社제품의 도소매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8 호령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심사인가되어야 한다.

각지 省級의 상무주관부문은 8 호령에 규정된 심사인가권한에 근거하여, 기업의 도소매 경영범위추가신청을 수리하든가, 또는 당해 신청서를 上級기관에 전송신청을 실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5 년 4 월 2 일

첨부자료-1: 외상투자非商業기업도소매판매경영범위추가 신청표

첨부자료-2 투자성공사/지역본부 도소매경영범위추가 신청표 (생략)

첨부자료-3 외상투자非商業기업/투자성공사 도소매 경영범위추가의 상급부문에 대한 신청표(생략)

생산형 외자기업의 非自社제품 유통판매 경영범위추가 신청표

기업명칭			
등기주소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전년도 판매액			
현재 경영범위			
추가신청하는 경영범위			
경영범위변경후의 기업구분	생산형기업		
	비생산형기업		
타 지역에 설립예정인 점포수			

주: 경영범위 변경후, 계속 생산형기업을 유지하려면, 사입판매의 매출액은 통상적으로 기업 총 매출액의 30%[주]이하로 되어야 한다. 비생산형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사입판매의 매출액 비율은 부과되지 않지만, 생산형기업으로서 세수우대조치의 적용은 받을 수 없다.

[주] 상무부는 당초 30%로 공포하였으나, 이후에 세무총국과의 협의를 거쳐 2005 년 9 월에 50%로 수정 발표하였음

법인대표서명:

회사공인날인:

③ 보세구 및 보세물류원구의 무역관리 문제에 관한 규정
(商資字[2005] 제 76 호)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시의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보세구, 보세물류원구내 기업에 대한 무역관리를 완비하기 위해 관련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一.보세구, 물류원구내의 기업과 개인은 「중국대외무역법」 「대외무역경영자등록 등기방법」과 「외상투자사업영역관리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법에 근거하여 무역권의 취득과 도소매권을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권한을 취득하는 기업과 개인은 법에 근거하여 중국 국내의 區外기업과 개인(무역권을 취득하지 않는 기업과 개인도 포함)과 무역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도소매권을 취득한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유통활동에 종사할수 있다.

二.보세구, 보세물류원구내의 대외무역경영자는 중국 國內區外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國內區外로부터 상품을 사입하는 경우, 국가의 수출입, 외화, 세수관리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一) 보세구, 보세물류원구와 國內區外에 출입하는 화물은 세관의 관련규정에 딸 수출입수속을 실시한다. 구내기업이 대외무역경영자의 신분으로 화물을 國內의 區外에 도소매하는 경우, 區外기업의 명의로 통관 및 외화핵소(外貨核銷) 등 수속을 실시한다. 區外기업 및 개인이區內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화물을 구입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수속을 실시한다.

(二) 보세구, 보세물류원구내의 대외무역경영자와 國外 간에 출입하는 화물은 중국이 참가, 또는 체결한 국제조약 및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규정에 별도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허가증관리를 행해야 한다.

(三) 國內區外로부터 보세구, 보세물류원구에 진입하는 「방직품수출임시관리 상품목록」에 속하는 방직품에 대해서 세관은 허가증의 검사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상술한 화물이 실제로 육지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방직품 임시수출관리의 실행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출되는 경우, 세관은 허가증을 근거로 수속을 실시한다.

三.보세구, 보세물류원구내 기업의 설립은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구내의 어떤 기업도 국가가 투자를 금지하는 영역에서 생산, 경영활동을 행해서는 안된다.

四.보세구, 보세물류원구내의 각종기업의 세수, 세관관리감독, 외화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세무총국, 세관총서, 국가외화관리국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판공실, 중국 세관총서 판공실
2005 년 7 월 13 일

④ 외상투자상업기업 심사비준의 지방부문에 대한 권한위양에 관한 통지
(商資函[2005]제 94 호) (2005 年 12 月 9 日 공포)

국무원의 행정심사 비준의 간소화에 대한 요구에 근거하여, 외상투자의 심사비준 수속을 더욱 간소화하고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일부 심사 심사비준사항을 省級 상무주관부문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이하 「지방부문」)으로 위양(委讓)하는 수속을 행하며, 구체적인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상투자상업기업이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제 9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유통판매(分銷)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하기 (1) (2)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省級 상무주관부문 및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가 심사비준하고 상무부에 보고등록(備案)을 행한다.

- (1) 경영방식이 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에 의한 판매
 - (2) 소매하는 상품이 강재(鋼材),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등의 중요 공업원재료 및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 제 17 조, 제 18 조에 규정된 상품
- (1) (2) 에 해당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지방부문이 상무부에 보고하고 상무부가 심사비준을 행한다.

2. 소매(零銷)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소재지의 省級 행정구 또는 국가경제기술개발구내에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는 이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지방부문이 그 심사 비준권한내에서 심사비준을 행하고 상무부에 보고등록한다.

- 단일 점포면적이 5,000 m²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 점포를 초과하는 경우. 동시에 당해 외국투자가가 설립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 개설된 同類점포의 총수가 30 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단일 점포면적이 3,000 m²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5 점포를 초과하는 경우. 동시에 당해 외국투자가가 설립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 개설된 同類점포의 총수가 50 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단일점포의 면적이 300 m²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외상투자非商業기업이 유통판매(分銷)의 경영범위를 추가하는 경우는 본 통지에 근거하여 수속처리한다.

4. M&A(并購) 방식에 의해 외상투자상업기업을 설립한 경우는 국내외기업이 동일의 관리조직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또는 실제의 관리감독자가 동일인인 경우는 상무부에 보고하여 상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최초에 상무부 비준에 의해 설립된 외상투자상업기업 및 상무부의 비준을 거쳐 유통판매(分銷)의 경영범위를 추가한 외상투자非商業企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본 통지가 규정하는 심사비준권한에 근거하여 수속처리한다.

6-10 항 : 생략

11. 본 통지는 2006 年 3 月 1 日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5 年 12 月 9 日

【 참고 자료 】

1.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시행에 수반한 상황조사 보고서 (제트로)
2. 「상해 화중컨설팅」웹사이트 관련정보
3. 「캐스트 중국비즈니스」웹사이트 관련정보
4. 「사례로 아는 중국비즈니스」(NNA)